

2018.04.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입법 예고 안내

1.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항

◇ 개정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추가 및 모델구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제2조제1호·제4호, 제3조제2항, 별표6, 별표7, 별표14, 별표15)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품목(26개 품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모델별 상세 기준 분류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등을 면제하고 인증서 발급 방법 등 규정 (제39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 안전인증기관에서 병행수입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

2018.04.24

2. 주요사항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성적서)에 대한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삭제

(제37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제3호, 제54조제3항제3호)

- CB성적서 유효기간(3년 이내)에 대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의 국제 기준이 개정(유효기간 삭제)됨에 따라 운용요령에 반영

라. 면제 규정 신설

-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조항 신설 (별표 16)
- 면제 대상 범위 확대
(국방용 군수품만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제품)
- 개인 사용 제품에 대한 면제 대상 명확화
(1개 제품 → 모델별 1개 제품)
- 국제회의·국제대회 사용 제품,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 **시장조사용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제23조 관련)

현재 (별표14)	개정안 (별표16)
(신설)	<p>5.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p> <p>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p> <p>7.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p>

2018.04.24

2. 주요사항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안전관리대상제품 품목별로 분류 (별표 25)
-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개정 현황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분류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정보 제공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 시험항목을 고온단락시험에서 구조확인으로 변경
-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 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품명세서 등을 통한 구조확인으로 시험항목 변경

◇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제품안전과

- 전화 : 043 - 870 - 5445 / 043 - 870 - 5455

- 팩스 : 043 - 870 - 5676~7

- 이메일 : psd0@korea.kr / consumer1@korea.k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장 공통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말한다.
2.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구조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인증대상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일모델 수입업자"란 최초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기준준수를 확인한 제품과 동일(제품 고유 명칭이 같으며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과 같다.

②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4와 같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와 같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6과 같다.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7과 같다.](#)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제품안전심의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

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안전심의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 위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번호 부여기준)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인증 번호 사전 부여)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 및 공장이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는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예정번호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안전확인 신고번호 사전 부여)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가 원할 경우 안전확인신고 예정번호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예정번호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장심사원)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ISO 9000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7년,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11조(사실확인서 발급) ① 규칙 제9조제5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 규칙 제28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제3항,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시험결과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실확인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① 법 제6조 제8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8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모델구분 세부기준) ① 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세부기준은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다.

② 규칙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 세부기준은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다.

제2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절차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등)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분류 및 범위는 별표 2 또는 별표 5의 제품분류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제15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수수료) ①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 수수료 : 50,000원

2. 심사수수료

가. 최초평가지 : 심사비용 × 2(명) × 3(일) [또는 1(인) × 6(일)]

나. 인정받은 품목범위 확대 시 : 심사비용 × 2(명) × 2(일)

[또는 1(인) × 4(일)]

②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 분야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평가 일수는 지정신청분류가 2분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분류가 추가될 경우 각 1인을 추가하여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 공고)」에 따른다.

제17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뢰)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반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되, 그 중 1인을 심사반장으로 선정하고 그 외 인원은 심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반 구성은 해당 분류의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 시험과 관련하여 총

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KOLAS) 및 제품인정기관인정제도(KAS)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해당분야 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구성된 심사반에게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소재지 변경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제19조(안전인증서의 변경) 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변경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인증의 승계) ① 안전인증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은 안전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제품 제조업을 양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전부 또는 규칙 별표 3의 분류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과 함께 양수받아야 한다.

제21조(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가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 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체(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를 신청자가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② 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계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

③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수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변경) 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변경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

로 같음할 수 있다.

제4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23조(면제확인대상 제품)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또는 영 제12조제1항제4호의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또는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대상제품은 별표 16과 같다.

제24조(면제확인 받은 제품의 목적 이행확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사후관리

제25조(안전기준 변경통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15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에게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를 같음할 수 있으며, 설명회 또는 교육 등에 불참한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성조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유통 중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처분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동일모델 수입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규칙 제21조, 제38조 및 제4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 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사용금지(이하, 표시사용금지라 한다) 또는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동 내용을 다른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동일한 모델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가 신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사용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설계변경 또는 제품의 시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유와 개선 예정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등으로 인한 표시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조업체 협의회구성) ① 협회는 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품목별 제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생산보급을 위한 공동연구
2. 원자재 공동구입·최신설비의 공동발주
3. 신기술 및 공법의 개발·도입·보급에 관한 사업

제2장 전기용품

제1절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29조(안전인증 신청)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품시험이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① 안전인증기관이 공장심사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인증업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

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영 제17조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진행된 시험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안전인증의 불가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및 변경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타 인증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제33조(공장심사기준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다.
2.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서 발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적합처리 할 수 있다.
3.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는 해당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는 [별표 18](#)의 설비와 [별표 19](#)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18](#)의 설비 이외에 [별표 19](#)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 중 외부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제조업자가 정한 주기별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자가 적합하게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은 해당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공장심사 생략)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동일분류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시험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다수공장의 등록 및 공장심사 등) ①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제조공장별로 각각 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라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분류의 전기용품은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

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1항의 시험결과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⑤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⑥ 옵션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⑦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전기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⑧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CB인증서 인정) 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 같다)로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안전기준 적용 시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NCB)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② CB인증서 제출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제38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로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인증서 발급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 별표 8에 따른 안전인증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은 별표 20을 따른다.

③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임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절차를 따른다.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동일모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0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확인하고, 공장심사를 실

시할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실시 7일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해당 정기검사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시료채취 시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분류를 달리하는 제품이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조 및 제조·검사설비가 유사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 제품 중 어느 하나의 제품만을 채취 할 수 있다.

⑦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 제품 분류별로 가장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1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제품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정기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처리기간은 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제41조(다수공장의 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등록된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분류가 동일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품시험은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규칙 별표 3의 제품 분류별로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

을 실시한다.

제42조(자체검사기준 등) ① 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는 별표 19에 따라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및 제품검사 등에 대한 자체검사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방법 등의 자체검사 규정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43조(자체검사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원자재검사는 해당 전기용품의 주요부품 검사항목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규정에 적합한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정검사는 최소한 별표 19 제1호의 검사항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의 품목에 대하여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품검사는 제품별로 별표 19 제2호의 검사항목별 및 검사주기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주요재질 또는 부품, 설계·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해당 제품의 모델에 대하여 전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재검사 또는 공정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별표 19 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제44조(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험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서를 접수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보완)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확인시험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6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

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서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④ 옵션 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⑤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은 대표적인 공장 1곳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에 따라 전체 시험을 실시하고, 그 외의 다수공장은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⑦ 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할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제47조(CB인증서 인정 절차) 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일

것.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② CB인증서 제출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제48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결과 인정 등) ①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의 제품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업자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용품 제조업자 시험소’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용품 제조업자 시험소’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지의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규칙 제27조 제6호의 안전확인시험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 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

2. 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3.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시험기관일 것

제50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이 경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은 [별표 20](#)을 따른다.

③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일모델을 확인한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지 15호서식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신청절차를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절 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51조(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① 제5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3조(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 절차) ①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변경 신청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① 제5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정격(定格)
- 나. 전기회로 도면
- 다.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결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④ CB시험성적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⑤ 외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 또는 국내의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받아야 한다.

제4절 수입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제55조(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항목 중 [별표 22](#)에 따른 시험항목만 적용한다.

제56조(수입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의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신청현황 및 부적합 내용 등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안전검사 부적합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제57조(안전인증등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8조(표시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는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

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59조(표시방법) ①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마크는 안전 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의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mm²초과 900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전선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불소수지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 m이하마다 (600 V 고무절연 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 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코드 이외 의 것으로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 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할 수 있다.

나. 불소수지절연전선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 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전구류는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 및 정격을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

4. 제품의 구조상 해당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
5. 전기용품에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는 안전확인 마크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전기제품의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6.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 표시 (Electronic-Labeling 이하 "e-labeling"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가. 전자적 표시(e-labeling)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전자적 표시(e-labeling)의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별표 5 제3호(전자적 표시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6절 안전에 영향을 주는 세부범위

제60조(세부범위)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는 별표 24에 따른다.

제61조(동등 특성 이상의 세부범위) ① 제조사에 상관없이 전기적인 특성 및 절연등급이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24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등의 구조·모양, 전기회로 등은 동일하고 단순히 부품을 제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멀티형 냉방기의 세부범위)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중 멀티형 냉방기의 경우 핵심부품인 압축기(실외기)의 변동 없이 실외기 최대용량의 범위 내에서 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

고등을 하거나,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전기용품(실 내기)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4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7절 안전기준

제63조(안전기준의 적용) ①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번호와 기준명은 별표 25와 같다.

② 규칙 별표 3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 규칙 별표 4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 및 규칙 별표 5 제1호의 사목부터 카목까지에 해당되는 전기용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표준 전압 및 주파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제외한다.

③ 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날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안전확인 시험을 신청한 날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공급자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날(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 의뢰일)
4. 규칙 제20조, 규칙 제37조 또는 규칙 제48조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은 제품 제조연월에 유효한 안전기준

제64조(유예기간 부여기준)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시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안전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등의 표시 및 사용설명서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6 개월 이상
2. 해당 전기용품의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3. 해당 전기용품의 설계·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 년 이상

제3장 생활용품

제1절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제65조(안전인증 신청)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품시험이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내용의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표 26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6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①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한 공장심사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생활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적합 항목을 개선해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항목 및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

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생활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생활용품을 보완 하여 3개월 이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 제할 수 있다.

제67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 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았을 때에 는 영 제17조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시험이 진행된 시험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안전인증의 불가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 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및 변경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안 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타 인증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제69조(승강기 안전인증의 첨부서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1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관련 서류(기계, 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함)
2. 제작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제70조(공장심사기준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

증을 신청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다.
2.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서 발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가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적합처리 할 수 있다.
3.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는 해당 생활용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는 **별표 27**의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와 **별표 28**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7**의 설비 이외에 **별표 28**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 중 외부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제조업자가 정한 주기별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자가 적합하게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

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은 해당 생활용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1조(공장심사 생략)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동일 품목으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시험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적합성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다수공장의 등록 공장심사 등) ①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제조공장별로 각각 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라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품목의 생활용품은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제73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 ① 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시험결과서를 발급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⑤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생활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서에 등록된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①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으로서 기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표준(ISO, IEC 등)
2. 국내·외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 등이 없는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5조(안전인증서 발급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 시 별표 8에 따른 안전인증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③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④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이 안전인증을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절차를 따른다.

제76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검사항목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의 자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 제품 품목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1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제품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실시 7 일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해당 정기검사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처리기간은 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동일품목으로 이미 정기검사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⑪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정기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통

보하여야한다.

제77조(다수공장의 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영 제9 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등록된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품목이 동일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품시험은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규칙 별표 3의 제품 품목별로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제78조(자체검사기준 등) 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제79조(자체검사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조업자는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기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생활용품의 안전확인신고

제80조(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 ①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시험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신청서를 접수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보완)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생활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적합 항목을 개선해 안전확인신고를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결과서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82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8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③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

구할 수 있다.

제83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시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③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확인을 위해 중복된 시험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이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영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EU가입국에 해당하는 것
2.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규정번호 30(자동차와 자동차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 또는 규정번호 54(상용차량과 상용차량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E마크를 각인한 것

제3절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85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생활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제8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나.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4절 석면안전기준

제87조(석면안전기준) 생활용품의 석면안전기준은 별표 29를 따른다.

부칙 <제2018-000호, 2018.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 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 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 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 ² 이상 6mm 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전기기기용스위치	가. 스위치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⑦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

분류	품 목	세부품목
		<p>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⑧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나. 전자개폐기</p> <p>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p>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p>① 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kΩ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②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③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p> <p>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p>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p>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p> <p>②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p> <p>③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p>

분류	품 목	세부품목
		<p>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p> <p>④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가. 퓨즈	<p>① 퓨즈(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p> <p>②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 초과 280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나. 차단기	<p>①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②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③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검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p>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p>① 전압조정기</p> <p>② 가정용 소형변압기</p> <p>③ 교류어댑터</p> <p>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p>① 진공청소기</p> <p>② 물흡입청소기</p> <p>③ 전기바닥청소기</p> <p>④ 전기표면세척기</p> <p>⑤ 스팀청소기</p> <p>⑥ 스팀해빙기</p> <p>⑦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다. 주방용 전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거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마. 모발관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
	바.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p>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p>
	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기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짱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아. 전기액체 가열기 기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젓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자. 전기담요 및 매	① 전기요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트, 전기침대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카. 전기온수기	①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간온수기
	타. 전기냉장·냉동기기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파. 전자레인지	①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 전기충전기	①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30V 초과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거. 전기건조기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 전열기구	① 전기스토브 ② 전열보드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⑦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더. 전기 마사지기	① 전기마사지기
	러. 냉방기	① 냉방기
	머. 유체펌프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버. 전기 가열기기	① 납땀인두 ② 납땀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땀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 전기욕조	①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저. 팬, 레인지후드	① 선풍기	

분류	품 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비교: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처. 화장실용 전기기기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커. 가습기	① 가습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서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통신·	가. 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

분류	품 목	세부품목
사무기기		②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그 밖에 가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젠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⑥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⑦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라. 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분류	품 목	세부품목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 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6. 절연 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①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① 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① 왁스 용해기 ② 초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다. 이·미용기기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라. 전기의자	① 전기이발용의자

분류	품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전동침대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마. 컴프레서(compressor)	① 컴프레서(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
	사. 구강청결기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아. 해충퇴치기	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자. 전기집진기	①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카. 전기에어커튼	①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비교: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 건조기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비교: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분류	품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너. 전기훈증기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①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 발생기	①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버. 전기세척기	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①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①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저. 에너지 저장장치	①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퍼. 기포발생기기	① 기포발생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고. 전기분무기	①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비교: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비교: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교: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보. 자동판매기	① 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① 전기소독기
	오. 제습기	①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①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분류	품목	세부품목
	초 그 밖에 가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대상없음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라. 전자악기	① 전자악기
	마.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바.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모니터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바. 제분기	① 제분기	
	② 스테이플러	

분류	품목	세부품목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사. 복사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아. 무정전 전원장치	① 무정전 전원 장치 (정격용량이 1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타. 노트북컴퓨터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cm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cm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①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테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방전램프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분류	품목	세부품목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라.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 (모듈) ③ 할로겐전구 (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로목 온열시트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7. 전기기기	가. 감자탈피기	① 감자탈피기
	나. 전기정미기	① 전기정미기
	다. 전기빵 자르개	① 전기 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① 애완동물목욕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①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사계	① 전기사계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①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③ OHP ④ 필름투영기
	차. 착유기	①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①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①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ck)	① 전기 작동 도어록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 전동형 롤스크린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 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 구동장치를 말한다)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 외한다.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분류	품목	세부품목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카메라	①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① 튜너
	다. 라디오 수신기	① 라디오 수신기
	라. 리시버	①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①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①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①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①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①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① AD/DA 변환장치
	카. 컴프레서 게이트	① 컴프레서 게이트
	타. 전자시계	①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①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①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①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①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①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①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①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 게임기구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비고: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쿠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①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	① 앰프	
	② 앰프 내장형 스피커	

분류	품목	세부품목
	저. 편집기	① 편집기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①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① 영상전송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 · 사무 기기	가. 스캐너	①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①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①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① 어학실습기
	마. 전자철판 및 보드	① 전자철판
		② 전자보드
	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①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①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①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①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① 번호표 발행기
		② 티켓 발행기
		③ 순번대기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선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	
	④ IP 주소 공유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분류	품목	세부품목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 파수변환기 (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 용 셋톱박스, A/V 신호수 신기 등)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①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 등)
	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셋톱박스 등)	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러. 재단기	① 재단기
	머.실물화상기	① 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① 입체영상기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 통신 기기	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저. 팩시밀리기기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①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펴.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①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용도의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노. 원격제어방송기기	① 원격제어방송기기
	도.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TM타터	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p>비고:</p> <p>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p> <p>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p>		

[별표 4]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②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2. 생활용품	가. 가스라이터	① 가스라이터
	나. 물놀이기구	① 공기주입물놀이기구 ② 공기주입보우트 ③ 수영보조용품(착용형) ④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다. 비비탄 총	① 청소년용 비비탄 총 ② 성인용 비비탄 총
3. 기계금속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및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만 해당된다]	① 조속기 ② 비상 정지장치 ③ 완충기 ④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⑤ 승강장 문 잠금장치 ⑥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나.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① 가정용 압력냄비 ② 압력솥
4. 섬유	대상없음	
5. 건축	대상없음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화학	가. 건전지	① 망간 건전지 ② 알칼리·망간 전지(L)
	나.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다. 자동차용 타이어	① 승용차용 타이어 ② 소형 트럭용 타이어 ③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2. 생활용품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①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나. 고령자용 보행차	① 고령자용 보조차
	다. 디지털도어록	① 디지털도어록
	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①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마. 스노보드	① 스노보드 ② 부츠 ③ 바인딩
	바. 스케이트보드	① 스케이트보드 ② 전동보드
	사. 스키용구	① 스키(알파인용) ② 스키화(알파인용) ③ 스키바인딩(알파인용)
	아. 이륜자전거	① 일반용자전거 ② 산악용자전거 ③ 전기자전거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자. 헬스기구	① 고정식운동기구 ② 벤치 프레스 ③ 러닝머신 ④ 고정식자전거 ⑤ 스텝퍼 ⑥ 로잉 머신 ⑦ 운동용슬라이더 ⑧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⑨ 야외운동기구

분류	품목	세부품목
	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① 휴대용 레이저용품
	카. 승차용 안전모	① 승차용 안전모 ② 승차용 눈보호구
	타. 운동용 안전모	① 자전거용 안전모 ② 롤러스포츠용 안전모 ③ 등산용 안전모 ④ 스키용 안전모 ⑤ 야구용 안전모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파. 온열팩	① 온열팩
	하. 수유패드	① 수유패드
	거. 기름난로	① 기름난로
3. 기계금속	가. 빙삭기	① 빙삭기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① 휴대용 예초기의 날 ②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①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라.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①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마. 럽쳐밸브	① 럽쳐밸브
	바.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①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사.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①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아.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①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자. 와이어로프	① 와이어로프
차. 안전회로기판	① 안전회로기판	
4. 섬유	가. 등산용로프	① 등산용로프
	나.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① 스포츠용 구명복 ② 부력 보조복
5. 건축	가. 미끄럼 방지 타일	① 미끄럼 방지 타일
	나. 실내용 바닥재	① 실내용 바닥재

[별표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화학	대상 없음	-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① 사무용캐비닛·파일캐비닛·로커
	나. 롤러스케이트	① 롤러스케이트
	다. 바퀴 달린 운동화	① 바퀴 달린 운동화
	라. 모터 달린 보드	① 모터 달린 보드
	마. 창문 블라인드	① 창문 블라인드
	바. 쌍꺼풀용 테이프	① 쌍꺼풀용 테이프
	사. 속눈썹 열 성형기	① 속눈썹 열 성형기
	아. 가(假) 속눈썹	① 가(假) 속눈썹
	자. 쇼핑카드	① 쇼핑카드
	차. 휴대용 사다리	① 주택용 사다리 ② 도배용 사다리 ③ 원예용 사다리
	카. 인라인롤러스케이트	①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타. 키보드	① 키보드
3.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① 자동차용 유압식 휴대용잭 ② 자동차용 나사식 휴대용잭
4. 섬유	대상 없음	-
5. 건축	물탱크	① 물탱크

[별표 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화학	가. 가죽제품	① 가죽제품
	나.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① 연질염화비닐호스 ② 폴리염화비닐관
	다. 화장비누	① 화장비누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① 책상 및 테이블 ② 의자 ③ 옷장·이불장 ④ 침대 ⑤ 썬크대 ⑥ 소파 ⑦ 기타 가구류
	나. 간이 빨래걸이	① 간이 빨래걸이
	다. 선글라스	① 선글라스
	라. 안경테	① 안경테
	마.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① 텐트 ② 난방용 텐트
	바. 고령자용 신발	① 고령자용 고무신발 ② 고령자용 염화비닐신발 ③ 고령자용 가죽신발 ④ 고령자용 발포신발
	사. 고령자용 지팡이	① 고령자용 일자형지팡이 ② 고령자용 조절식지팡이 ③ 고령자용 접이식지팡이 ④ 고령자용 조립식지팡이 ⑤ 고령자용 다족지팡이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아.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①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자. 고령자용 목욕의자	① 고령자용 목욕의자
	차. 고령자 위치추적기	① 고령자 위치추적기

분류	품목	세부품목
	카. 물안경	① 물안경
	타. 반사 안전조끼	① 반사 안전조끼
	파. 스테인레스 수세미	① 스테인레스 수세미
	하. 시각장애이용 지팡이	① 시각장애이용 일자형지팡이 ② 시각장애이용 접이식지팡이 ③ 시각장애이용 안테나형지팡이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거. 침대 매트리스	① 침대 매트리스
	너. 우산 및 양산	① 우산 ② 양산 ③ 우산 겸용 양산
	더. 휴대용 경보기	① 휴대용 경보기
	러.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① 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지,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머. 벽지 및 종이장판지	① 벽지 ② 종이장판지
3. 기계금속	대상없음	-
4. 섬유	가. 가정용 섬유제품	① 의류 ②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나. 양탄자	① 양탄자
5. 건축	대상없음	-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제7조 관련)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1)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A	D	0	1	0	0	0	1	-	01	0	0	1	-	01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코드	안전확인코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H	X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J	Y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S	Z
기타	P	W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국내				국외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 밖의 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북 한	Q		

※ 비고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지역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피지 등

- (2) 미주지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 (3) 유럽지역 :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 (4) 중동지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 (5) 아프리카 지역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콩고 등
- (6) 그 밖의 지역: 괌,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 등

다) ③란에는 전기용품 분류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전기용품분류	코 드	전기용품분류	코 드
전선 및 전원코드	01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 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03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 부품 및 연결부품	04	정보·통신·사무기기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변압기	06		

라) ④란에는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업자의 일련번호를 네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마) ⑤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두 자리 숫자(예 : 2010년→10, 2011년→

11, 2022년→22)로 기재한다.

바) ⑥란에는 동일공장·동일제품분류의 기본모델(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련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는 동일모델 수입업자 식별코드를 기재한다.

아) ⑧란에는 기본모델의 변경신청에 따른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기본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사용방법

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 및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한다.

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안전인증표지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 함께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제품에 표시한다.

나.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1)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방법

A	0	1	D	A	0	0	0	1	-	12	0	0	1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 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일반	A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 증명을 하는 경우	L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없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M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일반	B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안전성 검사 없이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를 발급하는 경우	N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C	

나) ②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코 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코 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코 드
-		등산용 로프	0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02	스포츠용 구명복	0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03	-			
-		건전지	05		
가스라이터	05	-			
물놀이기구	07	-			
비비탄 총	10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10		
-		-			
-		-			
조속기	51	자동차용 타이어	13		
비상정지장치	52	-			
완충기	53	빙삭기	15		
상승과속방지장치용브레이크	54	-			
승강장문잠금장치	55	미끄럼 방지 타일	18		
에스컬레이터용역주행방지장치	56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19		
		고령자용 보행차	20		
		디지털도어록	22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24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코 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코 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코 드
		-			
		스노보드	31		
		스케이트보드	32		
		스키용구	33		
		아동용 이단침대	34		
		-			
		완구	36		
		유아용 삼륜차	37		
		유아용 의차	38		
		유아용 캐리어	39		
		이륜자전거	40		
		일회용 기저귀	41		
		확용품	44		
		헬스기구	45		
		휴대용 레이저용품	46		
		-			
		-			
		온열 시트	50		
		보행기	51		
		승차용 안전모	52		
		운동용 안전모	53		
		유모차	54		
		유아용 침대	55		
		-			
		-			
		-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59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60		
		럽쳐밸브	61		
		엘리베이터용 스텝	62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63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64		
		와이어로프	65		
		안전회로기관	66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코 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코 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코 드
		실내용 바닥재	67		
		온열팩	68		
		수유패드	69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70		
		기름난로	71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코드 1, 4, 6, 8, 9, 11, 12, 13, 14, 15, 16, 17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코드 3, 4, 7, 8, 9, 11, 14, 16, 17, 21, 23, 25, 26, 27, 28, 29, 30, 34, 35, 36, 37, 38, 39, 42, 43, 44, 47, 48, 49, 51, 54, 55, 56, 57, 58은 삭제된 코드

다) ③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인증기관명	코 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4
FITI시험연구원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KOTITI시험연구원	7

라) ④란에는 생활용품 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A	경 기 도	H	아시아지역	R
부산광역시	B	강 원 도	I	미주지역	S
대구광역시	C	충청북도	J	유럽지역	T
인천광역시	D	충청남도	K	중동지역	U
광주광역시	E	경상북도	L	아프리카지역	V
대전광역시	F	경상남도	M	그 밖의 지역	W
울산광역시	G	전라북도	N	국내생산 역수입	Y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세종특별자치시	X	전라남도	O		
		제 주 도	P		
		북 한	Q		

※ 비 고

외국의 지역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지역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휘지 등
- (2) 미주지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 (3) 유럽지역 :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 (4) 중동지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 (5) 아프리카 지역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콩고 등
- (6) 그 밖의 지역 : 괌,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 홍콩 등

마) ⑤란에는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바) ⑥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2자리 숫자(예 : 2010년→10, 2011년→11, 2022년→22)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는 동일공장·동일제품분류의 인증 또는 신고 순서의 일련번호를 숫자로 기재한다.

아) ⑧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서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라목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의 번호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⑧란에 "ch"를 표시한다.

3)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사용방법

가)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 및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한다.

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안전인증표지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 함께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제품에 표시한다.

[별표 9]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제13조 관련)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정격전압	(1) 300V/300V 인 것 (2) 300V/500V 인 것 (3) 450V/750V 인 것 (4)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선심의 수	(1) 단심인 것 (2) 2심이상인 것
		단면적 또는 직경	(1) 6mm ² 이하인 것 (2) 6mm ² 초과 35mm ² 이하인 것 (3) 35mm ² 를 초과하는 것
		도체의 주재료	(1) 동인 것 (2) 기타인 것(주재료를 기재할 것)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 나. 전자 개폐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전류	(1) 3A 이하인 것 (2) 3A 초과 6A 이하인 것 (3) 6A 초과 10A 이하인 것 (4) 10A 초과 20A 이하인 것 (5) 20A 초과 40A 이하인 것 (6) 40A 초과 60A 이하인 것 (7) 60A 초과 100A 이하인 것 (8) 100A 초과하는 것
		방수보호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극수	(1) 단극인 것 (2) 2극인 것 (3) 3극인 것 (4) 3극 초과하는 것
		접점재료	(1) 동, 은 또는 동합금, 은합금인 것 (2) 기타인 것(접점재료를 기재할 것)
3. 전원용 커패시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00V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전원필터			(3) 200V 초과 250V 이하인 것 (4) 250V 초과 350V 이하인 것 (5) 350V 초과하는 것
		등급	(1) X1 등급인 것 (2) X2 등급인 것 (3) X3 등급인 것 (4) Y1 등급인 것 (5) Y2 등급인 것 (6) Y3 등급인 것 (7)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용량	(1) 0.1 μ F 이하인 것 (2) 0.1 μ F 초과 0.33 μ F 이하인 것 (3) 0.33 μ F 초과 1 μ F 이하인 것 (4) 1 μ F 초과 3 μ F 이하인 것 (5) 3 μ F 초과 5 μ F 이하인 것 (6) 5 μ F 초과하는 것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 품 및 연결부품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방수보호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정격전류	(1) 3A 이하인 것 (2) 3A 초과 5A 이하인 것 (3) 5A 초과 10A 이하인 것 (4)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5) 15A 초과 25A 이하인 것 (6) 25A 초과 35A 이하인 것 (7) 35A 초과하는 것
		극수	(1) 단극인 것 (2) 2극인 것 (3) 3극 이상인 것
		접속기의 전 선 부착여부	(1) 일체형인 것 (2) 분리형인 것
		과부하보호장 치(멀티탭에 한정한다)	(1) 있는 것 (2) 없는 것
5. 전기용품	가. 퓨즈	구조	(1) 가용체와 고리를 붙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① 퓨즈		(2) 가용체와 고리를 일체로 성형한 것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차단용량	(1) 100A 이하인 것 (2) 100A 초과 300A 이하인 것 (3) 300A 초과 500A 이하인 것 (4) 500A 초과 1,000A 이하인 것 (5) 1,000A 초과 1,500A 이하인 것 (6) 1,500A 초과 2,500A 이하인 것 (7) 2,500A 초과 5,000A 이하인 것 (8) 5,000A 초과 7,000A 이하인 것 (9) 7,000A 초과 10,000A 이하인 것 (10) 10,000A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00mA 이하인 것 (2) 100mA 초과 800mA 이하인 것 (3) 800mA 초과 2.5A 이하인 것 (4) 2.5A 초과 6.3A 이하인 것 (5) 6.3A 초과 10A 이하인 것 (6)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7) 15A 초과 30A 이하인 것 (8) 30A 초과 60A 이하인 것 (9) 60A 초과 100A 이하인 것 (10) 100A 초과하는 것
	② 온도퓨즈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전류	(1) 5A 이하인 것 (2) 5A 초과 15A 이하인 것 (3) 15A 초과하는 것
		공칭동작온도	(1) 100℃ 이하인 것 (2) 100℃ 초과 120℃ 이하인 것 (3) 120℃ 초과 160℃ 이하인 것 (4) 160℃ 초과 200℃ 이하인 것 (5) 200℃ 초과하는 것
	나. 차단기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 ② 배선용 차단기	극수	(1) 단극인 것 (2) 2극인 것 (3) 3극인 것 (4) 3극 초과하는 것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차단전류	(1) 1,000A 이하인 것 (2) 1,000A 초과 1,500A 이하인 것 (3) 1,500A 초과 2,500A 이하인 것 (3) 2,500A 초과 5,000A 이하인 것 (4) 5,000A 초과 7,500A 이하인 것 (5) 7,500A 초과 10,000A 이하인 것 (6) 10,000A 초과 15,000A 이하인 것 (7) 15,000A 초과 20,000A 이하인 것 (8) 20,000A 초과 25,000A 이하인 것 (9) 25,000A 초과 30,000A 이하인 것 (10) 30,000A 초과 50,000A 이하인 것 (11) 50,000A 초과 75,000A 이하인 것 (12) 75,000A 초과하는 것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① 기기보호용	정격전류	(1) 16A 이하인 것 (2) 16A 초과 32A 이하인 것 (3) 32A 초과 63A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차단기		(4) 63A 초과 100A 이하인 것 (5) 100A 초과하는 것
	② 배선용 차단기	과전류트립 장치	(1) 열동식인 것 (2) 전자식인 것 (3) 기타인 것 (종류를 기재할 것)
	③ 누전 차단기	극수	(1) 2극인 것 (2) 3극인 것 (3) 3극 초과하는 것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차단전류	(1) 1,000A 이하인 것 (2) 1,000A 초과 1,500A 이하인 것 (3) 1,500A 초과 2,500A 이하인 것 (4) 2,500A 초과 5,000A 이하인 것 (5) 5,000A 초과 7,500A 이하인 것 (6) 7,500A 초과 10,000A 이하인 것 (7) 10,000A 초과 15,000A 이하인 것 (8) 15,000A 초과 20,000A 이하인 것 (9) 20,000A 초과 25,000A 이하인 것 (10) 25,000A 초과 30,000A 이하인 것 (11) 30,000A 초과 50,000A 이하인 것 (12) 50,000A 초과 75,000A 이하인 것 (13) 75,000A 초과하는 것
	③ 누전 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 7mA 이하인 것 (2) 7mA 초과 15mA 이하인 것 (3) 15mA 초과 30mA 이하인 것 (4) 30mA 초과 50mA 이하인 것 (5) 50mA 초과 100mA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6) 100mA 초과하는 것 (7) 기타인 것(다중정격인 것 : 정격감도 전류를 기재할 것)
		누전트립 동작시간	(1) 0.03초 이하인 것 (2) 0.03초 초과 0.1초 이하인 것 (3) 0.1초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6A 이하인 것 (2) 16A 초과 32A 이하인 것 (3) 32A 초과 63A 이하인 것 (4) 63A 초과 100A 이하인 것 (5) 100A 초과하는 것
		과전류트립 장치	(1) 열동식인 것 (2) 전자식인 것 (3) 기타인 것 (종류를 기재할 것)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50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6. 절연변압기		정격용량	(1) 50VA 이하인 것 (2) 50VA 초과 100VA 이하인 것 (3) 100VA 초과 200VA 이하인 것 (4) 200VA 초과 500VA 이하인 것 (5) 500VA 초과 1kVA 이하인 것 (6) 1kVA 초과 2kVA 이하인 것 (7) 2kVA 초과 4kVA 이하인 것 (8) 4kVA 초과하는 것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권선의 절연종류	(1) A종인 것 (2) E종인 것 (3) B종인 것 (4) F종인 것 (5) H종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6) 기타인 것 (절연종류를 기재할 것)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 주방용전열기구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마. 모발관리기 바.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아. 전기액체가열기기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정격입력 (전기충전기는 제외한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7. 전기기기	카. 전기온수기 타. 전기냉장·냉동기기 파. 전자레인지 하. 전기충전기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2A 이하인 것 (3) 2A 초과 3A 이하인 것 (4) 3A 초과 4A 이하인 것 (5) 4A 초과 5A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거. 전기건조기 너. 전열기구 더. 전기마사지 기 러. 냉방기 및 제습기 며. 유체펌프 버. 전기가열기 기 서. 교류전원을 사 용 하 는 전격 살충 기		(6) 5A 초과 6A 이하인 것 (7) 6A 초과 7A 이하인 것 (8) 7A 초과 8A 이하인 것 (9) 8A 초과 10A 이하인 것 (10)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11) 15A 초과 20A 이하인 것 (12) 20A 초과 25A 이하인 것 (13) 25A 초과 30A 이하인 것 (14) 30A 초과하는 것
	어. 전기욕조 저. 팬 레인지후 드 처. 화장실용 전기 기기	방수 보호 등 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커. 가습기 터. 그 밖에 가 목부터 커 목 까 지 의 기기외유사한 기기	절연등급	(1) 01종인 것 (2) 0종인 것 (3) 1종인 것 (4) 2종인 것 (5) 3종인 것
		발열부의 형 태	(1) 보빈식인 것 (2) 열판식인 것 (3) 시이즈식인 것 (4) 석영관식인 것 (5) 운모식인 것 (6) 전극식인 것 (7) 리본식인 것 (8) 스페이스식인 것 (9) 기타인 것 (형태를 기재할 것)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입력	(1) 200W 이하 (2) 2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3) 4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4)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5) 800W 초과 1 kW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6) 1kW 초과 1.5 kW 이하인 것
		방수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없음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직류전원장치 나. 그밖에 가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
		정격입력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4)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5)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6)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7)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8)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9)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10) 1,000W초과 2,000W이하인 것 (11) 2,000W초과 3,000W이하인 것 (12) 3,000W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정격전압	(1) 250V인 것 (2) 500V인 것 (3) 600V인 것 (4) 750V인 것
11. 조명기기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 10A 이하인 것 (4) 10A 초과하는 것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핀(극)의 수	(1) 1 인 것 (2) 1 초과 2 이하인 것 (3) 2 초과 4 이하인 것 (4) 기타인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11. 조명기기		방수보호등급	K 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외곽의 재질	(1) 세라믹인 것 (2) 합성수지인 것 (3) 금속인 것 (4) 기타인 것
		접촉방식	(1) 나사형인 것 (2) 꽃음형인 것 (3) 삽입형인 것 (4) 맞대기형인 것 (5) 기타인 것
		스위치	(1) 있는 것 (2) 없는 것
		온도	(1) T 표시 있는 것 (2) T 표시 없는 것
	나. 일반조명기구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④ 할로겐등기구 ⑤ 고압방전등기구 ⑥ 투광조명기구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1) 20W 이하인 것 (2) 20W 초과 50W 이하인 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4)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5) 200W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하는 것
		램프의 종류	광원의 종류를 기재할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방수 보호 등급	(1) K 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⑦ LED등기구	정격전압	(1) 220V 인 것 (2) 기타인 것(정격전압 기재)
		정격입력	(1) 20W 이하인 것 (2) 2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4) 200W 초과하는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 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 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②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③ 네온 변압기 ④ 조명기구용 컨버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1) 20W 이하인 것 (2) 20W 초과 50W 이하인 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4)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5) 200W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인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사용장소	(1) 내장형(기구내용)인 것 (2) 독립형인 것 (3) 일체형인 것 (4) 기타인 것(장소를 기재할 것)
		램프의 종류	(1)광원의 종류를 기재할 것
	라. 안정기 내장형 램프 (LED용 포함)	베이스 종류	(1) K 60061-1에 의거 종류별
		정격입력전 력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50W 이하인 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4) 100W 초과하는 것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 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 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 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 것 (4) 400V 초과하는 것 (5)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전류	(1) 3A 이하인 것 (2) 3A 초과 6A 이하인 것 (3) 6A 초과 10A 이하인 것 (4) 10A 초과 20A 이하인 것 (5) 20A 초과 40A 이하인 것 (6) 40A 초과 60A 이하인 것 (7) 60A 초과하는 것
		방수보호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극수	(1) 단극인 것 (2) 2극인 것 (3) 3극인 것 (4) 3극 초과하는 것
		접점재료	(1) 동 또는 동합금인 것 (2) 기타인 것(접점재료를 기재할 것)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없음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6. 절연변압기	가. 가. 고주파 웰더 나. 나. 전기용 접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50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용량	(1) 50VA 이하인 것 (2) 50VA 초과 100VA 이하인 것 (3) 100VA 초과 200VA 이하인 것 (4) 200VA 초과 500VA 이하인 것 (5) 500VA 초과 1kVA 이하인 것 (6) 1kVA 초과 2kVA 이하인 것 (7) 2kVA 초과 4kVA 이하인 것 (8) 4kVA 초과하는 것
		권선의 절연 종류	(1) A종인 것 (2) E종인 것 (3) B종인 것 (4) F종인 것 (5) H종인 것 (6) 기타인 것 (절연종류를 기재할 것)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 이 나. 전기 용해기 다. 이·미 용기 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 대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입력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7. 전기기기	마. 컴프레서 (compressor)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바. 전기온수 매트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사. 구강청결기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아. 해충퇴치기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자. 전기집진기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차. 서비스기기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카. 전기에어 커튼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하. 게임기구		정격입력 (에너지저장 장치에 한정 함)	(1) 5kVA 이하인 것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2) 5kVA 초과 10kVA 이하인 것
	너. 전기훈증기	(3) 10kVA 초과 50kVA 이하인 것		
	더. 수도 동결 방지기	정격전류	(4) 50kVA 초과 100kVA 이하인 것	
러. 산소이온 발생기	(1) 1A 이하인 것			
머. 전기정수기	(2) 1A 초과 2A 이하인 것			
버. 전기세척기	(3) 2A 초과 3A 이하인 것			
서. 전기헬스기구	(4) 3A 초과 4A 이하인 것			
저. 에너지 저장장치	(5) 4A 초과 5A 이하인 것			
처. 가정용 전동 재봉기	(6) 5A 초과 6A 이하인 것			
커. 사우나기기	(7) 6A 초과 7A 이하인 것			
터. 관상및 애완용 전기기기	(8) 7A 초과 8A 이하인 것			
퍼. 기포발생기	(9) 8A 초과 10A 이하인 것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10)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고 전기분무기	(11) 15A 초과 20A 이하인 것			
	(12) 20A 초과 25A 이하인 것			
	(13) 25A 초과 30A 이하인 것			
	(14) 30A 초과하는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보 자동관매기 소 전기소독기 오 재습기 조 음식문처리기 초 그밖의 기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01종인 것 (2) 0종인 것 (3) 1종인 것 (4) 2종인 것 (5) 3종인 것
		발열부의 형태	(1) 보빈식인 것 (2) 열판식인 것 (3) 시이즈식인 것 (4) 석영관식인 것 (5) 운모식인 것 (6) 전극식인 것 (7) 리본식인 것 (8) 스페이스식인 것 (9) 기타인 것 (형태를 기재할 것)
	어. 전차 충전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입력	(1) 10kVA 이하인 것 (2) 10kVA 초과 50kVA 이하인 것 (3) 50kVA 초과 100kVA 이하인 것
8. 전동공구	대상없음		
9. 오디오·비디오	가. 텔레비전 수상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응용기기	나. 디스크 플레이어 다. 오디오 시스템 라. 전자악기 마. 오디오 프로세서 바. 영상 프로세서 사. 그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 유사한 기기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정격입력	(1) 100W 이하인 것 (2)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3) 2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4) 4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5)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6)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7) 1,000W 초과 2,000W 이하인 것 (8) 2,000W 초과 3,000W 이하인 것 (9) 3,000W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모니터 나. 프린터 다. 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
		정격입력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바. 제분기		(3)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사. 복사기		(4)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아. 무정전전원장치		(5)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6)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차. 디지털TV		(7)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방수 보호 등급	(8)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절연등급	(9)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10) 1,000W 초과 2,000W이하인 것
카. 코팅기		(11) 2,000W 초과 3,000W이하인 것	
	타. 노트북컴퓨터 (태블릿PC를 포함한다)	키패드	(12) 3,000W 초과하는 것
		주기관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1) 일체형 (2) 탈착형 (3) s/w 내장형 (4) 위 (2), (3) 겸용인 것
			(1) 칩셋(Chipset)의 종류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2) 그래픽프로세서(GPU) 유무
		전지	(1) 전지의 유무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단전지의 종류	(1) 리튬이온전지 (2) 리튬폴리머전지 (3) 니켈수소전지 (4) 니켈카드뮴전지
		단전지의 형태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1) 원통형 (2) 각형
		전지의 형태 및 치수 (단전지의 종류 3, 4에 해당)	(1) K10024에 의거 분류
		단전지의 활물질을 구성하는 주요물질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양극) (1) 코발트화합물계 (2) 기타계 (음극) (1) 탄소계 (2) 실리콘계 (3) 기타계
		단전지의 외부재질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1) 소프트케이스 (2) 하드케이스 (KC 62133 부속서 참고)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해당)	
		단전지 전류용량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원통형) (1) 2,400mAh 이하 최대용량 (2) 2,400mAh 초과 최대용량 (각형) (1) 1,500mAh 이하 최대용량 (2) 1,500mAh 초과 3,000mAh 이하 최대용량 (3) 3,000mAh 초과 5,000mAh 이하 최대용량 (4) 5,000mAh 초과 최대용량
		단전지 최대 충전전압 (단전지 종류 1, 2에 해당)	(1) 4.25V 이하 (2) 4.25V 초과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단전지의 종류 1, 2에 해당)	(1) 직/병렬 구조별 (2) 직렬 구조별 (단, 동일한 보호회로 사용시, 병렬 구조별 대신 최대 병렬수 적용)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 기구 ① 백열등 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구조의 것) ② 샹데리아 등	정격전압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1) 20W 이하인 것 (2) 20W 초과 50W 이하인 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11. 조명기기			(4)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5) 200W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하는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나. 방전램프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정격 입력 전력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20W 이하인 것 (3) 20W 초과 30W 이하인 것 (4) 30W 초과 40W 이하인 것 (5) 40W 초과 50W 이하인 것 (6)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7)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8)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9)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10)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11)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12) 600W 초과 700W 이하인 것 (13) 7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14) 800W 초과 900W 이하인 것 (15) 9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베이스 종류	(1) K 60061-1에 의거 종류별
	다. 가목을 제외한 조명기구 ①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② 충전식 휴대전등 ③ 투광조명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하는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램프당 광원의 정격 입력 (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30W 이하인 것 (3) 30W 초과 50W 이하인 것 (4)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5)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등기구 ④ 할로젠등기구	사용하는 것 은 제외)	(6) 200W 초과하는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3A 이하인 것 (3) 3A 초과하는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2) 2등용 초과 4등용 이하인 것 (3) 4등용을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 60529에 의거 IP 등급별 구분 적용	
		램프의 종류	(1) 광원의 종류를 기재할 것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① 백열전구 ② 할로젠전구 (※ 칼라램프 포함)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베이스 종류	(1) K 60061-1에 의거 종류별	
		정격입력전 력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20W 이하인 것 (3) 20W 초과 30W 이하인 것 (4) 30W 초과 50W 이하인 것 (5)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6) 100W 초과하는 것	
	③ LED램프 (모듈)	베이스 종류	(1) K 60061-1에 의거 종류별	
		정격입력전 력	(1) 10W 이하인 것 (2) 10W 초과 50W 이하인 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4) 100W 초과하는 것	
	비고: 상기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유사 제품분류를 인용하여 적용 한다.			

[별표 1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구분세부기준(제13조 관련)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7. 전기기기	가. 감자 탈피기(脫皮機)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나. 전기 정미기(精米機) 다. 전기 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시계 사.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차. 착유기(搾油機) 카. 보플제거기	정격입력 (전기충전기는 제외한다)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 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 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 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 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 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 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 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 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 것
7. 전기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채배기	정격입력 (전기차충전기,	(1) 5kVA 이하인 것 (2) 5kVA 초과 10kVA 이하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파. 전기 작동 도 어록(door lock)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거. 전동형 롤스크린 너.. 그 밖에 가목 부터거목까지 의 기기와 유사 한 기기	에너지저장장치 에 한정함)	(3) 10kVA 초과 50kVA 이하인 것 (4) 50kVA 초과 100kVA 이하인 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2) 1A 초과 2A 이하인 것 (3) 2A 초과 3A 이하인 것 (4) 3A 초과 4A 이하인 것 (5) 4A 초과 5A 이하인 것 (6) 5A 초과 6A 이하인 것 (7) 6A 초과 7A 이하인 것 (8) 7A 초과 8A 이하인 것 (9) 8A 초과 10A 이하인 것 (10) 10A 초과 15A 이하인 것 (11) 15A 초과 20A 이하인 것 (12) 20A 초과 25A 이하인 것 (13) 25A 초과 30A 이하인 것 (14) 30A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0I종인 것 (2) 0종인 것 (3) 1종인 것 (4) 2종인 것 (5) 3종인 것
		발열부의 형태	(1) 보빈식인 것 (2) 열판식인 것 (3) 시이즈식인 것 (4) 석영관식인 것 (5) 운모식인 것 (6) 전극식인 것 (7) 리본식인 것 (8) 스페이스식인 것 (9) 기타인 것 (형태를 기재할 것)
		충전전력 공급방식 (전기차충전기에 한정한다)	(1) 교류 충전방식인 것 (2) 직류 충전방식인 것 (3) 기타인 것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	[별표 7]의 제8호(전동공구)의 모델구분 및 세부기준을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는 전동공구	따른다.	
	가.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다. 라디오수신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정격전압을 기재할 것)
	라.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 수신기 야.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카. 콤프레셔 게이트 타. 전자시계	정격입력	(1) 100W 이하인 것 (2)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3) 2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4) 4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5)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6)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7) 1,000W 초과 2,000W 이하인 것 (8) 2,000W 초과 3,000W 이하인 것 (9) 3,000W 초과하는 것
	파. CCTV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더. CATV 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게임기구 서. 오디오 및 비디오학습기 어. 앰프 저. 편집기 쳐.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10.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 것 (3) 기타인 것
		절연등급	(1) 1종인 것 (2) 2종인 것 (3) 3종인 것 (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10. 정보·통신·사무기기	라. 어학실습기 마. 전자철판 및 보드 바.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야.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 포함)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 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장치(I PTV용 셋톱박스 등) 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너. A/D 및 D/A	정격입력	(1) 50W 이하인 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 것 (3) 100W 초과 200W 이하인 것 (4) 200W 초과 300W 이하인 것 (5) 300W 초과 400W 이하인 것 (6) 400W 초과 500W 이하인 것 (7) 500W 초과 600W 이하인 것 (8) 600W 초과 800W 이하인 것 (9) 800W 초과 1,000W 이하인 것 (10) 1,000W 초과 2,000W이하인 것 (11) 2,000W 초과 3,000W이하인 것 (12) 3,000W 초과하는 것
		방수 보호 등급	(1) K60529에 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 것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p>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p> <p>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p> <p>러. 차단기</p> <p>며. 실물화상기</p> <p>벼. 입체영상기</p> <p>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용통신기기만 해당한다)</p> <p>어.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p> <p>저. 팩시밀리기기</p> <p>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p> <p>커.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p> <p>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p> <p>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p>		<p>(2) 2종인 것</p> <p>(3) 3종인 것</p> <p>(4) 기타인 것(등급을 기재할 것)</p>

제품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노. 원격 제어방송기기 도.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1. 조명기구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① 램프용 글로우 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 스타터	정격 전압	(1) 150V 이하인 것 (2) 150V 초과인 것 (3) 기타인 것
		외곽의 재질	(1) 합성수지인 것 (2) 금속인 것 (3) 기타인 것
(비고: 상기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유사 제품 분류를 인용하여 적용한다.)			

[별표 1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제13조 관련)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1.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종류별		용도별, 구조별, 모양별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종류별		미가황 트레드용 고무, 가황된 트레드용 고무
2. 생활	가. 가스라이터	종류 (형식)별	종류별	일반용, 일회용
			형식별	전자식, 돌식, 터보형식, 토치형식
		구조별	불꽃높이 조절방식	조절식, 비조절식
			연료탱크 용적	용적량 10mL 이하, 10mL 초과
			외형	장난감형태, 비장난감 형태
		재질별	합성수지, 금속, 기타	
	나. 물놀이 기구	제1부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종류별	50 cm 이상의 물놀이기구 -스윙링, 파도타기, 플로트류 등 76 cm 이상의 동물형상의 물놀이 기구
			모양별	-
			크기별	-
			재질별	-
		제2부 공기주입 보트	종류별(사용정원)	1종(3인 이하용), 2종(4인 이상 7인 이하용), 3종(8인 이상 15인 이하용), 4종(특수용)
			모양별	-
			크기별	-
			재질별	플라스틱제, 고무제
		제3부 수영보 조용품 (착용형)	종류별	A타입, B타입
			모양별	-
			크기별	-
재질별	-			
제4부 수영보조 용품 (비착용형)	모양별	-		
	크기별	-		
	재질별	-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다. 비비탄 총	청소년	모양별	-
		성인	모양별, 재질별	-
3. 기계 금속	가. 조속기	종류별	정격속도	1.0m/s 이하인 것,
				1.0m/s 초과 4.0m/s 이하인 것
				4.0m/s 초과 6.0m/s 이하인 것
				기타
	나. 비상 정지장치	종류별	정격속도	0.75m/s 이하인 것
				1.0m/s 이하인 것
				1.0m/s 초과 4.0m/s 이하인 것
				4.0m/s 초과 6.0m/s 이하인 것
				6.0m/s 초과인 것
				기타
			적용중량	1800kg 이하인 것
				1800kg 초과 4500kg 이하인 것
				4500kg 초과 6800kg 이하인 것
				6800kg 초과 9500kg 이하인 것
	9500kg 초과인 것			
	기타			
	다. 완충기	종류별	정격속도	1.0m/s 이하인 것
				1.6m/s 이하인 것
1.0m/s 초과 4.0m/s 이하인 것				
4.0m/s 초과 6.0m/s 이하인 것				
6.0m/s 초과인 것				
기타				
적용중량			1800kg 이하인 것	
			1800kg 초과 4500kg 이하인 것	
			4500kg 초과 6800kg 이하인 것	
			6800kg 초과 9500kg 이하인 것	
			9500kg 초과인 것	
			기타	
라. 상승과속	종류별	정격속도	1.0m/s 이하인 것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1.0m/s 초과 4.0m/s 이하인 것
				4.0m/s 초과 6.0m/s 이하인 것
				6.0m/s 초과인 것
				기타
			적재하중	1000kg 이하인 것
				1000kg 초과 1600kg 이하인 것
				1600kg 초과 2000kg 이하인 것
				2000kg 초과인 것
				기타
			마. 승강장 문 잠금장치	종류별
	200V 초과인 것			
	정격전류	2.0A 이하인 것		
		2.0A 초과인 것		
	바.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종류별	층고	6m 이하
				6m 초과 12m 이하
				12m 초과 20m 이하
				20m 초과
				기타
	사.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내부용기 재질별	알루미늄합금주물제, 알루미늄합금판재, 스테인리스스틸제, 기타의 것
			구조별	슬라이드식, 낙하뚜껑식, 눌림뚜껑식, 기타의 것
압력조정장치 기구별			추식, 스프링식, 지렛대식, 기타의 것	
안전장치 기구별			팁식, 고무붓슈식, 스프링식, 온도휴즈식, 기타의 것	

[별표 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안전적용범위	
1. 화학	가. 건전지 (충전지는 제외)	전해액의 종류		망간 건전지, 알칼리·망간 전지(L)	
		모양 및 치수		안전기준 부속서의 표2	
	나. -	-		-	
	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종류별	3중, 4중, 5중, 6중		
		용량별	-		
	라. -	-		-	
마. 자동차용 타이어	종류별	용도별, 구조별			
2. 생활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종류별(핸들형식)		분리식, 일체식, 기타	
		재질별		금속제, 알루미늄제 등	
		모양별		-	
	나. 고령자용 보행차	워킹프레임	재질별	-	
			모양별	-	
		롤레이터	종류별	옥내용, 옥외용	
			재질별	-	
			모양별	-	
			워킹테이블	종류별	옥내용, 옥외용
	재질별	-			
	모양별	-			
	다. 디지털도어록	종류별	내화형 여부	내화형(F), 비내화형(NF)	
			화재시 대비방법	내열식(H), 온도센서식(T)	
			메탈 비상키 사용 유무	열쇠식(K), 비열쇠식(NK)	
			손잡이 유무	주키 도어록(M), 보조키 도어록(S)	
	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종류별	체중별	체중 25kg 이하, 체중 25초과 50kg 미만, 체중 50kg 이상	
			용도별	일반 롤러스포츠용, 경기용(곡예, 묘기용 포함)	
		재질별	-		
모양별		-			
형식별		-			
마. 스노보드	종류별	스노보드	1300mm 이상, 900 ~ 1300mm 미만		
		부츠	-		
		바인딩	스트랩 바인딩(A형, C형),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안전적용범위
				스텝인 바인딩, 플로우인 바인딩, 플레이트 바인딩(알파인 바인딩)
	바. 스케이트보드	종류별		A등급, B등급
		형식별		-
		재질별		-
		모양별		-
	사. 스키용구	종류별	스키(알파인용)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스키화(알파인용)	A형, C형
			스키바인딩(알파인용)	C형 바인딩, CA형 바인딩, A형 바인딩
아. 이륜 자전거	일반용 자전거	프레임 재질별		-
		프레임 형태		다이아몬드형, 그 밖의 것
		차체 서스펜션별		서스펜션 유/무
	산악용 자전거	프레임 재질별		-
		프레임 형태		다이아몬드형, 그 밖의 것
		차체 서스펜션별		서스펜션 유/무
	전기 자전거	구동방식별		스로틀방식, PAS 방식, PAS+스로틀방식
		전지종류별		2차전지, 납축전지
		프레임 재질별		-
		프레임 형태		다이아몬드형, 그 밖의 것
		차체 서스펜션별		서스펜션 유/무
	자. 헬스기구	고정식 운동기구	정확도	
구동방식			와이어 로프식, 벨트식, 유압식, 체인방식, 전동방식	
운동부위			상체운동, 하체운동, 몸통운동용	
사용용도			업소용, 가정용	
벤치 프레스		정확도		A급, B급, C급
		사용용도		업소용, 가정용
러닝머신		정확도		A급, B급, C급
		사용용도		업소용, 가정용
고정식 자전거		정확도		A급, B급, C급
		사용용도		업소용, 가정용
스텝퍼		정확도		A급, B급, C급
		사용용도		업소용, 가정용
로잉머신		사용용도		업소용, 가정용
운동용		사용용도		업소용, 가정용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안전적용범위
	슬라이더		
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종류별	A종, B종
		형식별(과장별)	과장범위 400~500nm
			과장범위 500~599nm
			과장범위 600~700nm
			그 외 과장범위 인 것
		재질별	-
모양별	-		
카. 승차용 안전모		종류별	승차용안전모(1종, 2종, 3종), 승차용 눈보호구(보안경형, 모자챙형, 안전모 부착형)
		재질별	-
		모양별	-
		크기별	대형, 표준형, 소형
		투시부의 색상별 (눈 보호구에만 해당)	-
타. 운동용 안전모	자전거· 롤러스 포츠용 안전모	종류별	차양 부착형, 차양 미부착형
		재질별	-
		모양별	-
	등산용 안전모	재질별	-
		모양별	-
	스키용 안전모	재질별	-
		모양별	-
	야구용 안전모	종류별	타자용, 포수용
		재질별	-
모양별		-	
파. 온열팩		종류별	분말형(붙일 수 없는 타입, 붙이는 타입), 액체형
		재질별	-
하. 수유판드		종류별	직물 수유판드, 부직포 수유판드, 혼합재질 수유판드
		주요재질별	-
거. 기름난로		연소방식별	심지식, 포트식, 압력분무식, 회전무화식, 제트분무식, 기화식
		통기방식별	개방식(자연통기형, 강제통기형)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안전적용범위	
3. 기계 금속	가. 빙삭기	재질별		-	
		용량별		-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 덮개	휴대용 예 초기의 날	종류별	중앙부 구멍의 지름	일반형, 특수형
				관절유무	일체형 절단날, 관절형 절단날, 둥근톱형 절단날, 초경탑달린 둥근톱형 절단날, 기타 성형절단날
		재질별		STC 85, STC 80, STC 75, STC 70, STC 65, STC 60, STS 5, STS 51, STS 420J2	
		모양별		-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형태별		표준형(S), 자유형(F)
			용도별		톱날용, 비톱날용, 비금속날용
			사용환경별		극한환경형(E), 일반환경형(N)
	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종류별		드럼형 브레이크, 디스크형 브레이크	
		적재하중별		-	
	라.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종류별		교류형(AC), 직류형(DC)	
		정격전류별		1A 이하, 1A 초과	
	마. 립쳐밸브	종류별		립쳐밸브, 단방향 유량제한기	
		밸브크기별		-	
	바.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종류별		에스컬레이터용, 수평보행기용	
		공칭폭별		-	
	사.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종류별	핀의 고정방법별	분할 핀형, 리벳형, 기타형	
			롤러의 재질별	강재형, 고무형, 기타형	
	아.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종류별		드럼형 브레이크, 디스크형 브레이크, 밴드형 브레이크	
		공칭폭별		-	
	자. 와이어로프	소선강도별		-	
		구조별		-	
로프지름별		6mm이하, 6초과12mm이하, 12초과24mm이하, 24mm초과 기타			
차. 안전회로기판	종류별		단면기판, 양면기판, 기타형식		
	전압종류별		교류, 직류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안전적용범위	
4. 섬유	가. 등산용로프	형식·종류별	형식	실을 서로 꼬아서 만든 것 (Hawser laid), 코어에 외피실을 덮어서 짠 것 (Kernmantel)	
			종류	한줄로프, 두줄로프, 쌍줄로프	
		재료의 조성 또는 혼용률별		KS K 0210에 따름	
	나. 스포츠용 구명복	스포츠용 구명복	종류별	부력에 따른 구분 및 용도별	A형, B형
				부력방식별	고체식, 팽창식, 혼용식
		부력 보조복	재질별		-
				종류별(부력방식별)	고체식, 팽창식, 혼용식
	재질별		-		
5. 건축	가. 미끄럼 방지 타일	호칭명별		바닥 타일, 모자이크 타일	
		소지의 질별		자기질, 석기질	
		조합별		바닥타일(자기질, 석기질), 모자이크 타일(자기질)	
		유약의 유무별		시유타일, 무유타일	
	나. 실내용 바닥재	제품 및 종류별	재질 및 구조별	비닐장판, 비닐바닥시트, 비닐바닥타일	
			사용용도별	온돌용, 비온돌용	

[별표 1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1. 화학	대상 없음	-		-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재질별	목재	보통합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가죽소재	
		종류별	사무용 캐비닛·파일캐비닛·로커	
	나. 롤러스케이트	종류별	치수별	260mm 초과, 260mm 이하
			용도별	레저용, 경기용
		재질별	-	
	모양별	-		
	다. 바퀴 달린 운동화	종류별	치수별	260mm 이상, 260mm 미만
			구조별	프레임 탈부착 할 수 있는 것(프레임이 1개, 프레임이 2개 이상), 프레임에 바퀴를 완전히 삽입할 수 있는 것
		재질별	-	
	모양별	-		
	라. 모터 달린 보드	종류별	보드 재료별	금속(알루미늄 등)보드, 나무
			모터의 배기량별	33cc, 40cc, 43cc, 기타
			기구 구성체별	일체형, 분리형
			바퀴 수별	4바퀴, 3바퀴, 2바퀴, 기타
			구동방식별	1륜구동, 2륜구동, 기타
	마. 창문 블라인드	-		-
	바. 쌍커플용 테이프	-		-
	사. 속눈썹 열 성형기	종류별	뷰러형, 마스크라형, 기타	
	아. 가(假) 속눈썹	종류별	위속눈썹, 아래속눈썹, 부분속눈썹	
재료별		KS K 0210에 따름		
색상별		-		
자. 쇼핑카트	종류별	A형태, B형태, AK형태, BK형태		
	모양별	-		
	용량별	바스켓의 최대용량 및 최소용량		
차. 휴대용 사다리	종류별	발붙임(전용, 겸용, 전용신축형, 겸용신축형), 보통, 신축형		
	재질별	-		
	길이별	-		

	카.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종류별	치수별	신발 치수가 260mm 미만, 신발 치수가 260mm 이상
			용도별	레저용, 경기용
		재질별		-
		모양별		-
	타. 킥보드	종류별	바퀴 수별	바퀴 2개, 바퀴 3개 이상
			구동방식별	수동식, 전동식
재료별		-		
규격별		최대하중(kg)		
모양별		-		
3. 기계 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종류별	보통형잭, 범퍼잭, 보디잭	
		호칭하중별	보통형잭(1.5 t, 2 t, 3 t, 4 t, 5 t, 10 t, 15 t, 20 t), 범퍼잭 및 보디잭 (0.5 t, 0.6 t, 0.7 t, 0.8 t, 1 t, 1.5t)	
4. 섬유	대상 없음	-	-	
5. 건축	물탱크	재질별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제(FRP), 폴리에틸렌제(PE)	
		형태별	일체식(원통형, 각형, 구형, 타원형, 기타형), 조립식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1. 화학	가. 가죽제품	용도에 따른 종류별	내의류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 (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
			중의류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외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를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등
			침구류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면적이 1㎡미만) 등
			기타제품류	가방(아동용가방 제외),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
			재료에 따른 종류별	
	나.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	종류별	음용수용, 일반용

		폴리염화비닐관	종류별	하배수용 폴리염화비닐관 하배수용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하배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관 하배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하배수용 폴리염화비닐제 부속품
	다. 화장비누	-	-	-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재질별	목재	보통합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가죽소재	
			종류별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옷장·이불장, 침대, 썬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
	나. 간이 빨래걸이	-	-	-
	다. 선글라스	종류별		열은색 선글라스, 일반 선글라스,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
	라. 안경테	-	-	-
	마. 텐트	종류별		에이형(벽있음/벽없음), 돔형(사각형/육각형), 반원통형, 가옥형, 절충형
	바. 고령자용 신발	종류별		고무신발, 염화비닐 신발, 가죽 신발, 발포신발
	사. 고령자용 지팡이	종류별		일자형, 조절형, 접이식, 조립식, 다족
		재질별		알루미늄, 목재 등
		모양별		-
	아.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	-
	자. 고령자용 목욕의자	종류별		팔걸이 목욕의자, 팔걸이 없는 목욕의자, 등받이 없는 목욕의자, 바퀴형 팔걸이 목욕의자, 팔걸이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등받이가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차. 고령자 위치추적기	종류별		GPS방식, 이동통신 겸용
	카. 물안경	종류별		일안식, 이안식, 다안식
	타. 반사안전조끼	종류별		재귀반사재(1종, 2종, 3종), 혼합성능재
파. 스테인레스 수세미	종류별		스테인레스, 울스테인레스	
하. 시각장애안용 지팡이	종류별		일자형, 접이식, 안테나형	

	거. 침대 매트리스	종류별		스프링 매트리스(강제스프링, 플라스틱제 스프링 등), 폼 매트리스(폼라바, 우레탄 폼, 천연라텍스, 합성라텍스), 섬유 매트리스(팜록, 천연섬유, 합성섬유(견면))
	너. 우산 및 양산	종류별	일반식	수동우산(장우산 포함), 수동양산
			접이식	수동우산, 수동양산, 자동우산, 자동양산
	더. 휴대용 경보기	-	-	-
	러. 접촉성 금속 장신구	품목별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머. 벽지 및 종이장판지	종류별		벽지, 종이장판지
		재질별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금속박제
3. 기계 금속	대상 없음	-	-	-
4. 섬유	가. 가정용 섬유제품	종류별	내의류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 (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
			중의류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외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울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를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등
			침구류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면적이 1㎡미만) 등

			기타제품류	가방(아동용가방 제외),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	
		섬유조성별		KS K 0210에 따름	
		색상별		-	
	나. 양탄자	종류별		직물제품류	단통, 월턴양탄자, 엑스민스터양탄자, 벨벳양탄자, 평직양탄자
				자수물류	티프티드 양탄자, 후키드러그
				부직포류	모전, 니들편치양탄자
			편물류	라셀양탄자, 고도양탄자	
			기타	코오드양탄자, 전기식모양탄자, 조유양탄자	
5. 건축	대상 없음	-		-	

[별표 16]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제23조 관련)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별표 17]

공장심사 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제33조, 제70조 관련)

공장심사 보고서 항목	부적합시 판정기준	비 고
2.원자재검사	2.1 개선명령	(1)인증 시 공장심사(이하「인증심사」라 한다.)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재질 및 부품“이란, 안전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부품을 말한다.
	2.2 개선명령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원자재검사를 대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3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공정검사	3.1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2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및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3 개선명령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4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5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6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거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인증제품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제품검사	4.1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2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4.3 개선명령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4.4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부적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장심사 보고서 항목	부적합시 판정기준	비 고
5.제조·검사설비 등	5.1 개선명령	-
	5.2 개선명령	-
	5.3 개선명령	-
	5.4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5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6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7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8 개선명령	(1)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기능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6.검사설비의 교정	6.1 개선명령	-
	6.2 지도개선	사용되는 모든 교정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6.3 개선명령	-
7.기록의 보존	7.1 개선명령	인증심사 및 인증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증취득 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어 보존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2 개선명령	-
	7.3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8.표시사항	8.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2 개선명령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는 인증취소 처분한다. 인증심사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9. 인증제품의 변경	9.1 인증취소	-
	9.2 인증취소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3 인증취소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부적합품의 관리	10.1 개선명령	-
	10.2 개선명령	-
11.보관 및 관리	11.1 지도개선	-
12.고객불만의 관리 및 안전	12.1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공장심사 보고서 항목		부적합시 판정기준	비 고
교육	12.2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2.3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2.4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생산공정의 내부감사	13.1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3.2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4.개선조치의 확인	14.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시료채취	15.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2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주1) 부적합 판정기준에서 “지도개선”인 항에 대하여는 심사원은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도록 제조자에게 성실히 지도하여 개선토록하며, 본 항들은 16.2항의 공장심사 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항목이 2회 이상 지도개선 사항 발생 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 * 주2)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2, 3.4, 3.5, 3.6, 4.1, 4.4, 5.7, 5.8, 7.3은 공장심사시 개선명령으로 판정된 업체가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최근 1년 이내 교육이수 실적에 한함) 지도개선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18]

전기용품의 검사설비(제33조 관련)

1. 전선 및 전원코드

분 류	검사설비명
가.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1) 마이크로미터 (최소눈금 0.01mm 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더블브리지 (4) 절연저항시험기 (5) 난연성시험기 (6) 내전압시험기 (7) 인장시험기 (8) 저울 (9) 항온조(고무절연재를 사용한 것에 한정한다)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분 류	검사설비명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mm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6) 온도기록계 또는 열전대온도계 (7) 전압조정기 (8) 절연저항계 (9) 내전압 시험기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구 분	검사설비명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2) 내전압시험기 (3)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구 분	검사설비명
가.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절연저항기 (4) 내전압시험기 (5)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6)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7)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8)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 전압, 전류, 전력계는 일반스위치, 전자스위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에 한정한다.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구 분	검사설비명
가. 퓨즈 및 퓨즈홀더 나. 전기기기용 차단기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조정기(정격용량이 3kVA이상인 것으로 300V까지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는 것) (4)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6)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7) 절연저항계 (8) 절연내력시험장치 (9) 퓨즈용단시험기(퓨즈에 한정한다)

6. 절연변압기

구 분	검사설비명
가.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6) 전압조정기 (7) 절연저항계 (8) 내전압 시험기

7. 전기기기

구 분	검사설비명
공통설비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6)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7) 전압조정기 (8) 내전압시험기
1. 전기다리미 2. 전기탈수기 3. 전기레인지,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5. 전기 건조기 6. 전기냉장(동) 기기 7. 전자레인지 8. 전열기기 9. 전기맛사지기	(1) 3점 지지대 (1) Long test pin (1) Long test pin (2) 부하시험기 (3) 1.8kg 시험용기 (1) 시험용 천 (2) 온수 공급 장치 (1) 표면온도측정기 (1) 냉매 측정기 (1) 고압 probe (2) 오실로스코프 (1) 5kg 추 (1) 90kg 부하

8. 전동공구

구 분	검사설비명
가. 전동공구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계(0.5급 이상) (4) 전류계(정도가 0.5급 이상) (5)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 (6)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7) 전압조정기 (8) 내전압 시험기

9.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명	검사설비명
가. 직류전원장치 나. 그밖의 가목과 유사한 기기	(1) 마이크로미터(최소눈금 0.01이하인 것) (2)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3) 전압조정기 (4) 전압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5) 전류계(정도가 0.6급 이상인 것) (6)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7) 열전대온도계 또는 기록온도계 (8) 내전압시험기

10. 조명기구

구 분	검사설비명
가. 램프홀더(소켓)	(1)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2) 밀리옴메터 (3)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4) 절연저항계 (5) 내전압시험기
나. 일반조명기구	(1)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2)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3) 절연저항계 (4) 내전압시험기 (5) 누설전류계 (6) 전압조정기(최대 500V) (7) 타이머(1/100s) (8)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바. 안정기	(1) 전압조정기 (2)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정도가 0.5급 이상인 것) (3) 절연저항계 (4) 내전압시험기 (5)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6) 열전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차. 안정기내장형램프	(1) 절연저항계 (2) 내전압시험기 (3) 캘리퍼스(최소눈금 0.05mm이하인 것) (4) 열전대온도계 또는 온도기록계 (5) 전력계, 전류계(정도가 0.5급이상인 것)

[별표 19]

자체검사(제33조, 제42조 관련)

1. 공정검사

제 품 분 야	검 사 항 목
가. 전선 및 전원 코드	(1) 스파크테스트(전선류) (2) 내전압시험 (3) 외관검사 (4) 기능(운전)시험 (5) 표시사항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 정전용량시험(커패시터) (2) 내전압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바. 절연변압기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제 품 분 야	검 사 항 목
사. 전기기기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압력조정장치시험(전기압력솔에 한정함) (4) 압력안전장치시험(전기압력솔에 한정함) (5) 외관검사 (6) 표시사항
아. 전동공구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자. 정보·통신·사무기기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차. 조명기기	(1) 내전압시험 (2) 기능(운전)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비고 :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는 샘플링 검사로 할 수 있다.

- 1) 전원코드 세트,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소켓류
- 2)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3)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2. 제품검사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가. 전선 및 전원코드	(1) 재료 및 구조		○
	(2) 물리적 특성		○
	(3) 전기적 특성	○	
	(4) 내연성		○
	(5) 표시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표시사항		○
	(2) 감전에 대한 보호	○	
	(3) 접지에 대한 보호		○
	(4) 단자 및 단자부		○
	(5) 구조		○
	(6) 고형물, 먼지와 물에 대한 보호 및 내습성		○
	(7) 절연저항 및 내전압	○	
	(8) 온도상승	○	
	(9) 내구성		○
	(10) 기계적 강도		○
	(11) 나사 통진부 및 접속부		○
	(12)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13) 절연재료의 내열, 내화, 내트래킹성		○
	(14) 내부식성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 외관 및 치수		○
	(2) 절연저항	○	
	(3) 내전압	○	
	(4) 정전용량	○	
	(5) 유전정접 및 등가 직렬저항		○
	(6) 누설전류	○	
	(7) 임피던스		○
	(8) 인덕턴스와 자기공진 주파수		○
	(9) 외부 박 단자		○
	(10) 단자 강도		○
	(11) 납땜 내열성		○
	(12) 납땜성		○
	(13) 온도급변		○
	(14) 진동		○
	(15) 범프		○
	(16) 충격		○
	(17) 용기 기밀성		○
	(18) 내한성, 내열, 저기압, 내습, 내구성		○
	(19) 온도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		○
	(20) 저장(고온, 저온)		○
	(21) 썩지		○
	(22) 충방전 및 돌입전류		○
	(23) 방폭		○
	(24) 열 안전성		○
	(25) 부품 및 표시의 내용제성		○
	(26) 부착, 전단, 기관 구부림		○
	(27) 유전 흡수, 가속 내습성, 수동 가연성		○
	(28) 고 썩지 전류, 전압 순시 과부하		○
	(29) 열 안전성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 표시사항 및 구조		○
	(2) 치수		○
	(3) 감전에 대한 보호	○	
	(4) 어스 장치		○
	(5) 단자		○
	(6) 내열, 방수, 내습성		○
	(7) 절연저항 및 내전압	○	
	(8) 어스극의 동작		○
	(9) 온도상승	○	
	(10) 개폐용량		○
	(11) 플러그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		○
	(12) 동작		○
	(13) 케이블의 접속		○
	(14) 기계적 강도		○
	(15) 내열성		○
	(16) 나사 통진부 및 접속부		○
	(17)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18) 절연재료의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19) 내부식성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표시		○
	(2) 치수 및 구조		○
	(3) 전기적 특성	○	
바. 절연변압기	(1) 표시 및 사용설명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전기적 특성	○	
	(4) 입력전압 변동		○
	(5) 부하시 출력전압, 전류		○
	(6) 무부하 출력 전압		○
	(7) 단락회로 전압		○
	(8) 온도상승	○	
	(9) 단락회로 및 과부하 보호		○
	(10) 기계적 강도		○
	(11) 먼지, 고체물질 및 습기 침투에 대한 보호		○
	(12)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13) 내연성		○
	(14) 구조 및 부품		○
	(15) 내부배선		○
	(16)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
	(17) 외부 전선 접속용 단자		○
	(18) 접지접속		○
	(19) 나사 및 접속		○
	(20)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21) 절연재료의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22) 내부식성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사. 전기기기	(1) 표시 및 사용설명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
	(4) 입력 및 전류		○
	(5) 온도상승	○	
	(6) 운전시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
	(7) 내습성		○
	(8)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	
	(9) 변압기 관련회로의 과부하 보호		○
	(10) 이상운전	○	
	(11)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		○
	(12) 기계적강도		○
	(13) 구조		○
	(14) 내부배선		○
	(15) 부품		○
	(16) 전원접속과 외부 유연성코드		○
	(17) 외부 전선용 단자		○
	(18) 접지접속		○
	(19) 나사 및 접속		○
	(20)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2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22) 내 부식성		○
	(23)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협성	○	
	(24) 내구성		○
아. 전동공구	(1) 표시사항		○
	(2) 감전에 대한 보호	○	
	(3) 시동		○
	(4) 입력 및 전류		○
	(5) 온도상승	○	
	(6) 누설전류	○	
	(7) 내습성		○
	(8)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9) 내구성		○
	(10) 이상운전	○	
	(11) 기계적 강도 및 기계적 위험		○
	(12) 구조 및 내부배선		○
	(13) 부품		○
	(14) 전원 접속과 외부 유연성 케이블 및 코드		○
	(15) 외부 전선용 단자 및 접지 접속		○
	(16) 나사 및 접속		○
	(17)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거리		○
	(18)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19) 내 부식성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자. 정보·통신·사무기기	(1) 부품적합검사		○
	(2) 전원인터페이스		○
	(3) 표시 및 취급설명서		○
	(4) 감전으로부터의 보호	○	
	(5) 동작전압 및 절연결정		○
	(6) 안전 초저전압회로 검사		○
	(7) 전류제한회로		○
	(8) 접지연속성 및 접지구조		○
	(9) 일차전원의 차단		○
	(10) 과전류 및 접지불량에 대한 보호	○	
	(11) 안전인터록 검사	○	
	(12) 절연거리 측정		○
	(13) 기기간의 상호접속		○
	(14) 제한전원 시험		○
	(15) 배선 및 접속에 관한 일반사항		○
	(16) 일차전원과의 접속		○
	(17) 배선단자에 관한 검사		○
	(18) 안전성 및 기계적 상해 위험		○
	(19) 기계적 강도 및 외력시험		○
	(20) 세부구조검사		○
	(21) 내화성 검사		○
	(22) 온도상승 시험	○	
	(23) 누설전류측정		○
	(24) 내전압 시험	○	
	(25) 이상상태 시험	○	
	(26) TNV 회로 및 절연		○
	(27) TNV 회로전압 및 절연		○
	(28) 사용자 및 서비스요원의 보호		○
	(29) 통신망으로부터 사용자 보호		○
	(30) 배선시스템의 과열방지		○
	(31) 전동기 이상상태 시험		○
	(32) 트랜스포머 과부하 시험		○
	(33) X선 방사시험	○	
	(34) 온도조절기 시험		○
	(35) 전화호출신호 시험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차. 부품	(1) 밀폐된 부품에 관한 시험		○
	(2) 접착제 노화성 시험		○
	(3) 부속서 A 난연성 시험 (항목별)		○
카. 조명기기 (램프소켓)	(1) 표시		○
	(2) 치수		○
	(3) 감전에 대한 보호	○	
	(4) 단자		○
	(5) 접지장치		○
	(6) 구조		○
	(7) 스위치달린 소켓		○
	(8) 내습성, 절연저항 및 내전압	○	
	(9) 기계적강도		○
	(10) 나사, 통전부 및 접속부		○
	(11) 연면거리와 공간거리		○
	(12) 정상동작		○
	(13) 내열성		○
	(14) 내과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15) 과도잔여스트레스 및 내식		○
	(16) 내구성		○
	(17) 진동		○
타. 형광등용 소켓 및 스타터소켓	(1) 표시		○
	(2) 감전 보호	○	
	(3) 단자		○
	(4) 구조		○
	(5) 먼지 및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
	(6) 절연저항 및 내전압	○	
	(7) 내구성		○
	(8) 기계적강도		○
	(9) 나사, 도전부 및 접속		○
	(10) 연면거리와 공간거리		○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12) 과도 잔류 응력에 대한 내성 및 내부식성		○
파. 일반 조명기구	(1) 표시		○
	(2) 구조		○
	(3) 연면거리와 공간거리		○
	(4) 접지		○
	(5) 단자		○
	(6) 외부 및 내부 배선	○	
	(7)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
	(8)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	○	
	(9) 내진성 및 내습성		○
	(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12) 하강거리와 정렬		○
	(13) 초특성		○
	(14) 전환동작		○
	(15) 고온 동작		○
	(16) 전원 내장형 비상용 조명기구에 대한 전지 충전기		○
	(17) 비상 동작에 대한 시험정치		○
하. 램프용자기식 안정기 (방전램프용)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단자		○
	(4)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절연내력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안정기 가열		○
	(9) 고전압 임펄스시험		○
	(10) 고장조건		○
	(11) 구조		○
	(1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3)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래킹성		○
	(15) 내부식성		○
	(16) 입력전류		○
	(17) 전류파형		○
	(18) 안정기설치		○
거. 램프용전자식 안정기 (방전램프용)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	○	
	(3) 단자		○
	(4) 보호접지를 위한 규정		○
	(5) 내습성과 절연	○	
	(6) 전기적강도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고장조건		○
	(9) 독립적 시동장치의 예열		○
	(10) 이그나이터의 진동전압		○
	(11) 기계적강도		○
	(12) 구조		○
	(1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4)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15) 내열성, 내화성, 내트래킹성		○
	(16) 내부식성		○
	(17) 입력전류		○
	(18) 전류 파형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너. 램프용자기식 안정기 (형광등용)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	○	
	(3) 단자		○
	(4) 보호 접지를 위한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내전압	○	
	(7) 권선의 내열성		○
	(8) 안정기 가열		○
	(9) 고전압 충격과 시험		○
	(10) 고장조건		○
	(11) 구조		○
	(1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3)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더. 램프용자기식 안정기 (형광등용)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
	(15) 내부식성		○
	(16) 예열조건		○
	(17) 램프전력 및 전류		○
	(18) 입력전류		○
	(19) 전류과형		○
러. 램프용전자식 안정기 (형광등용)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단자		○
	(4)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내전압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고장상태 조건		○
	(9) 관련부품의 보호		○
	(10) 이상상태 조건		○
	(11) 구조		○
	(1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3) 나사, 도전부 및 접속부		○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
	(15) 내부식성		○
	(16) 시동		○
	(17) 동작조건		○
	(18) 입력전류		○
	(19) 전류과형		○
	(20) 내구성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머. 안정기내장형 램프	(1) 표시		○
	(2) 교환성		○
	(3) 감전보호	○	
	(4) 내습시험후 절연저항	○	
	(5) 내습시험후 내전압	○	
	(6) 기계적강도		○
	(7) 캡 온도상승		○
	(8) 내열성		○
	(9) 내화성 및 점화성		○
	(10) 고장상태 조건		○
	(11) 램프전력		○
	(12) 광속		○
	(13) 광속유지율		○
버.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용 포함)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단자		○
	(4)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절연내력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고장조건		○
	(9) 변압기의 과열		○
	(10) 비정상상태		○
	(11) 구조		○
	(1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13)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
	(15) 내부식성		○
	(16) 출력전압과 전류		○
버.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용 포함)	(17) 전체 회로 전력		○
	(18) 회로 역률		○
	(19) 공급 전류		○
	(20) 가청주파수에서 임피던스		○
	(21) 순간 과전압		○
	(22) 이상운전		○
	(23) 내구성		○
	서. 자기식네온 변압기	(1) 표시	
(2) 전기적 특성			○
(3) 온도 상승		○	
(4) 내구성			○
(5) 보호 등급			○
(6) 직렬 캐패시터 양단 전압			○

제품분류	검 사 항 목	최소 검사주기/회	
		3개월	1년
	(7) 내습성		○
	(8)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	
	(9) 구조		○
	(10) 도체 접속		○
어. 전자식네온 변압기	(1) 표시		○
	(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3) 단자		○
	(4) 접지		○
	(5) 내습성과 절연	○	
	(6) 절연내력	○	
	(7) 권선의 열 내구성		○
	(8) 고장조건		○
	(9) 변압기의 과열		○
	(10) 비정상상태		○
	(11) 구조		○
	(12)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
	(13) 보호 회로		○
	(14) 나사, 충전부 및 접속부		○
	(15)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레킹성		○
	(16) 내부식성		○
	(17) 무부하 정격 출력전압과 정격출력전류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제39조,제50조 관련)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1. 전선 및 전원 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① 절연전선	도체
		② 케이블	절연체
		③ 코드	시스
		④ 코드세트	전원전선 플러그 상호연결커플러(인렛)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 접지 재질 접점 재질 PCB 퓨즈 X-커패시터 Y-커패시터 기기보호용차단기 Varistor 릴레이 Triac 변압기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	전원전선 플러그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 접지 재질
		③ 코드스위치	전원전선
		④ 전자식 스위치	플러그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	충전부 절연재질
		⑥ 시간지연스위치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⑦ 조광기	단자, 접지 재질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	PCB 퓨즈 X-커패시터 Y-커패시터 기기보호용차단기 스위치 Varistor 릴레이 Triac 변압기
	나. 전자개폐기	① 전자개폐기	베이스(Base) 커버(Cover) 크로스바(Cross-bar) 접점(Contact) 가동자(Moving contact) 고정자(Fixing contact) 코일(Coil) 철심(Steel core)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 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 필터	① X·Y 커패시터 ② 전파장해역제용 전원 필터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	외함(절연물) 유전체(Dielectric) 레진(Resin) 필터(Filter) 단자(Lead wire) 전극(Electrode)
	비고: 100 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 (전원분배기 포함)	전원전선(Power Cord) 플러그(Power Plug) 상호연결커플러(인렛)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전파방해역제용 전원필터(인렛) 콘센트 X-커패시터 Y-커패시터 Coupling Capacitor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퓨즈 퓨즈홀더 온도퓨즈 기기보호용차단기 자동온도조절기 스위치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 누전차단기(RCBO) 배선용차단기(MCCB) 전자개폐기 Fusible Resistor Discharge Resistor Bridge Resistor 릴레이 변압기 Opto Coupler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PCB Varistor 고전압 변압기 Inverter Unit PTC Thermistor SMPS(내장형)
		② 상호연결커플러	전원전선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접지 재질
		③ 플러그 및 콘센트	전원전선 플러그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접지 재질 PCB 퓨즈 X-커패시터 Y-커패시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기기보호용차단기 스위치 Varistor 릴레이 Triac 변압기 Opto Coupler
		④ 케이블릴	전원전선 플러그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접지 재질 온도과승방지장치 퓨즈 기기보호용차단기 스위치
비고: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보호 용 부품	가. 퓨즈	① 퓨즈	가용체 통형단자 외관재질 Pig tail
		② 온도퓨즈	Thermal pellet(유기화합물) Compresstion spring Trip spring
	나. 차단기	① 기기보호용 차단기	베이스(Base)
		② 배선용차단기	커버(Cover) 핸들 접점(Contact) 가동자(Moving contact) 고정자(Fixing contact) 트립소자
		③ 누전차단기	베이스(Base) 커버(Cover) 핸들 접점(Contact) 가동자(Moving contact)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고정자(Fixing contact) 트립소자 영상변류기 PCB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① 전압조정기 ② 가정용 소형변압기 ③ 교류어댑터	전원전선 플러그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 접지 재질증명서 PCB 퓨즈 X-커패시터 Y-커패시터 기기보호용차단기 스위치 Varistor 릴레이 Triac 변압기 온도과승방지장치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	전원전선 플러그 상호연결커플러(인렛)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 콘센트 X-커패시터 Y-커패시터 퓨즈 온도퓨즈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누전차단기 / 배선용차단기 안정기 자동온도조절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스위치류 (DC용 스위치는 제외)
	다. 주방용전열기구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저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도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LED용 컨버터 램프홀더 글로우스타터 소켓 리튬배터리 (인증비대상 배터리 제외) 컴프레서 비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전자 개폐기/전자 접촉기 과전류 계전기 릴레이(2차 제어용은 제외)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변압기
	마. 모발관리기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	히터 외곽재질 (장식부 등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 제외)
	바.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전동기 전동기 커패시터 직류 전동기 (DC 42V 이하는 제외)
	비고: 음식이나 그릇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솔레노이드 / 솔레노이드 밸브
	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깡통따개 ⑬ 전기칼	고전압 변압기 인버터 히터용 램프 모니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아. 전기액체가열기기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젓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자. 전기담요, 매트, 전기침대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카. 전기온수기	①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② 순간온수기	
	타. 전기냉장·냉동기 기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파. 전자레인지	① 전자레인지	
	하. 전기충전기	①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거. 전기건조기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비고: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 전열기구	① 전기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전열보드 ③ 전기라디에이터 ④ 전기온풍기 ⑤ 축열식 전기난방기 ⑥ 전구모양 히터 ⑦ 펠릿 스토브	
	더. 전기마사지기	① 전기마사지기	
	러. 냉방기	① 냉방기	
	머. 유체펌프	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버. 전기가열기기	① 납땀인두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 전기욕조	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저. 팬, 레인지 후드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처. 화장실용 전기기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커. 가습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해머	전원전선 플러그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 X-커패시터 Y-커패시터 퓨즈 온도퓨즈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⑧ 전기급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누전차단기 / 배선용차단기 스위치류 (DC용 스위치 제외) 리튬배터리 (인증비대상 배터 리 제외) 비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 치 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전자 개폐기/ 전자 접촉기 과전류 계전기 릴레이(2차 제어용은 제외) 변압기 외곽재질 (장식부등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 제외) 전동기 전동기 커패시터 직류 전동기 (DC 42V 이하는 제외)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통신·사무기 기	가. 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 ②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 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원코드세트 전원전선(Power Cord) 플러그(Power Plug) 상호연결커플러(인렛)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인 렛) 콘센트 X-커패시터 Y-커패시터 Coupling Capacitor 퓨즈 퓨즈홀더 온도퓨즈 기기보호용차단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안정기 자동온도조절기 스위치 조명기구용Converter 램프홀더 Rechargeable Li-ion Battery Pack 직류전원장치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 상호연결커플러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Laser pick-up 전자개폐기 Fusible Resistor Discharge Resistor Bridge Resistor 릴레이 변압기 Opto Coupler 히터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PCB Line Filter AC 전동기 DC Fan 전동기 Varistor 고전압 변압기 Inverter Unit Ballast Unit PTC Thermistor 램프 CRT/PDP/LCD Surge protector SMPS(내장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외곽 재질 전원전선 스위치 접촉자/나사소켓
	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텐드 (전자 회 로 가 있는 구조의 것) ④ LED등기구 ⑤ 할로젠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⑥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⑦ 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스위치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조절기 온도퓨즈 안정기및 램프 제어장치 일체형 안정기 및 제어장치일 경우만 적용(변압기, 포토커플러, X, Y 커패시터, 퓨즈, 라인필터, PCB, Fusible resistor) 전원전선 외함재질 써지보호장치 램프홀더 LED패키지 PCB(LED모듈) 상호연결 커플러(인렛) 상호연결 커플러(커넥터) 플러그 AC전동기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 이그나이터 스타터 스타터홀더 릴레이 코드세트
	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	변압기 포토커플러 X, Y 커패시터 퓨즈 Fusible Resistor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전원전선 PCB 외함재질(방화용 외함재질 포함) 스위치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퓨즈 온도조절기 써지보호장치소자 라인필터 상호연결 커플러(인렛) 상호연결 커플러(커넥터) 플러그 릴레이 코드세트 몰딩 재질
	라. 안정기내장형 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변압기 포토커플러 X, Y 커패시터 퓨즈 Fusible Resistor 외함재질 PCB 전원스위치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퓨즈 온도조절기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써지보호장치 캡(베이스) 재질 LED패키지 라인필터 몰딩재질

비고: 융·복합 신기술 제품 등 해당 제품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위의 안전관리부품 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할 수 있다.

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전원전선 플러그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접지 재질 접점 재질 PCB 퓨즈 X-커패시터 Y-커패시터 기기보호용차단기 스위치 Varistor 릴레이 Triac 변압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접지 재질 접점 재질 PTC소자
		③ 자동압력 스위치	전원전선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플러그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접지 재질 접점 재질 PCB 퓨즈 X-커패시터 Y-커패시터 기기보호용차단기 스위치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Varistor 릴레이 Triac 변압기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 릴레이 ⑥ 에너지레귤레이터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 접지 재질 접점 재질 PTC소자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① 고주파웰더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전원전선 플러그 충전부 절연재질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단자, 접지 재질 PCB 퓨즈 X-커패시터 Y-커패시터 기기보호용차단기 스위치 Varistor 릴레이 Triac 변압기 IGBT Fast recovery diode AC Fan 전동기 온도과승방지장치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① 과일 껍질깎이	전원전선
	나. 전기 용해기	① 왁스 용해기	플러그
		② 초코렛 용해기	상호연결커플러(인렛)
		③ 파라핀 용해기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다. 이·미용기기	① 두피모발기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
		② 샴푸기기	콘센트
		③ 모발가습기	X-커패시터
		④ 손톱정리기	Y-커패시터
		⑤ 전기면도기	퓨즈
		⑥ 전기이발기	온도퓨즈
⑦ 안면사우나기		누전차단기 / 배선용차단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① 전기이발용의자	안정기	
	② 전동침대	자동온도조절기	
	③ 전기온열의자	스위치류(DC용 스위치는 제	
	④ 각도조절의자	외)	
마. 컴프레서 (compressor)	① 컴프레서 (compressor)	LED용 컨버터	
바. 전기온수매트	① 전기온수매트	램프홀더	
사. 구강청결기	① 전동칫솔	글로우스타터 소켓	
	② 구강세척기	리튬배터리 (인증비대상 배터	
아. 해충퇴치기	① 해충퇴치기	리 제외)	
자. 전기집진기	② 전기포충기	컴프레서(안전확인 대상인 컴	
	① 전기집진기	프레서의 부품 등재는 시동	
차. 서비스기기	① 전기광택기	릴레이만 등재)	
	② 수하물보관기	비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	
	③ 지폐교환기	치	
	④ 동전교환기	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카. 전기에어커튼	① 전기에어커튼	전자 개폐기/ 전자 접촉기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과전류 계전기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릴레이(2차 제어용은 제외)	
		변압기	
하. 게임기구	① 레이저사격기기	히터	
		② 운전시물레이션게임기	외곽재질 (장식부등 안전에
		③ 인형뽑기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 제외)
		전동기	
		전동기 커패시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7. 전기기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직류 전동기 (DC 42V 이하는 제외) 솔레노이드 / 솔레노이드 밸브(DC 42V 이하는 제외))
		비고 1.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2.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2의 2 제9호 범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너. 전기훈증기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①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발생기	① 산소이온발생기 ② 이온발생기	
	며. 전기정수기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버. 전기세척기	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①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①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저. 에너지 저장장치	①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쳐. 가정용 전동재봉기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7. 전기기기	커피. 사우나기기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피. 기포발생기기	① 기포발생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고. 전기분무기	①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주방용전동기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 자동판매기	① 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① 전기소독기	
	오. 제습기	①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①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초. 그밖에 가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대상없음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전원코드세트 전원전선 플러그 상호연결커플러(인렛)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나.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인렛)
	다.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라. 전자악기	① 전자악기	콘센트 X-커패시터 Y-커패시터 Coupling Capacitor 퓨즈 퓨즈홀더 온도퓨즈 기기보호용차단기 안정기 자동온도조절기 스위치 조명기구용Converter 램프홀더 Rechargeable Li-ion Battery
	마.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믹서를 포함한다)	
	바.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Pack 직류전원장치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 상호연결커플러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Laser pick-up 전자개폐기 Fusible Resistor Discharge Resistor Bridge Resistor 릴레이 변압기 Opto Coupler 히터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PCB Line Filter AC 전동기 DC Fan전동기 Varistor 고전압 변압기 Inverter Unit Ballast Unit PTC Thermistor 램프 CRT/PDP/LCD Surge protector SMPS(내장형)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가. 모니터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전원코드세트 전원전선 플러그 상호연결커플러(인렛)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10. 정보·통신·사무기기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인렛) 콘센트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X-커패시터 Y-커패시터 Coupling Capacitor 퓨즈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퓨즈홀더 온도퓨즈 기기보호용차단기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안정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자동온도조절기	
	바. 제분기	① 제분기 ② 스테이플러	스위치	
	사. 복사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조명기구용Converter 램프홀더	
	아. 무정전전원장치	①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Rechargeable Li-ion Battery Pack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직류전원장치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상호연결커플러 누전차단기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배선용차단기 Laser pick-up	
타. 노트북컴퓨터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휴대전화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대각선의 길이가 17cm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전자개폐기 Fusible Resistor Discharge Resistor Bridge Resistor 릴레이 변압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Opto Coupler 히터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PCB Line Filter AC 전동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DC Fan 전동기 Varistor 고전압 변압기 Inverter Unit Ballast Unit PTC Thermistor 램프 CRT/PDP/LCD Surge protector SMPS(내장형)
	파.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① 전지	단전지 (Cell) IC 퓨즈 PTC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마이크로 퓨즈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샹데리아 등	전원전선 외함재질 전원스위치 램프홀더 플러그 써지보호장치(바리스터)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조절기 온도퓨즈 코드세트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나. 방전램프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외함재질 캡(베이스) 재질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① 크리스마스 추리용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스위치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조절기 온도퓨즈 안정기및 램프 제어장치 일체형 안정기 및 제어장치일 경우만 적용(변압기, 포토커플러, X,Y 커패시터, 퓨즈, 라인필터, PCB, Fusible resistor) 전원전선 외함재질 써지보호장치 램프홀더 LED패키지 PCB(LED모듈) 상호연결 커플러(인렛) 상호연결 커플러(커넥터) 플러그 AC전동기 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 이그나이터 스타터 스타터홀더 릴레이 코드세트
		③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전원전선 외함재질 스위치 램프홀더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④ 할로젠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플러그 써지보호장치(바리스터)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조절기 온도퓨즈 코드세트 상호연결 커플러(인렛) 상호연결 커플러(커넥터) 코드세트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① 백열전구	외함재질 캡(베이스) 재질
		② LED램프(모듈)	변압기 포토커플러 X, Y 커패시터 퓨즈 전원전선 PCB 외함재질(방화용 외함재질 포함) 스위치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퓨즈 온도조절기 써지보호장치소자 라인필터 LED패키지 상호연결 커플러(인렛) 상호연결 커플러(커넥터) 코드세트 몰딩재질
		③ 할로젠전구(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외함재질 캡(베이스) 재질

비고: 용·복합 신기술 제품 등 해당 제품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위의 안전관리부품 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할 수 있다.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1. 전선 및 전원 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7. 전기기기	가. 감자탈피기(脫皮機)	① 감자탈피기	전원전선
	나. 전기 정미기(精米機)	① 전기정미기	플러그
	다. 전기 빵 자르개	① 전기 빵 자르개	상호연결커플러(인렛)
	라. 애완동물 목욕기	① 애완동물목욕기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마. 전기주류숙성기	① 전기주류숙성기	전파장해역제용
	바. 전시기계	① 전시기계	전원필터
	사.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콘센트
	아. 전기분수기	① 전기분수기	X-커패시터
	자. 투영기	① 슬라이드 투영기	Y-커패시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퓨즈
		③ OHP	퓨즈홀더(외장형)
		④ 필름투영기	온도퓨즈
	차. 착유기(搾油機)	① 착유기	누전차단기
	카. 보풀제거기	① 보풀제거기	/배선용차단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①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안정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ck)	① 전기 작동 도어록	자동온도조절기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스위치 (저전압용 스위치 제외)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압선택스위치
	거. 전동형 롤스크린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인터록 스위치 LED용 컨버터 램프홀더 글로우스타터 글로우스타터 소켓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리튬배터리 (인증비대상 배터리 제외) 컴프레서 비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전자 개폐기/ 전자 접촉기 과전류 계전기 릴레이 변압기 히터 외곽재질 (장식부등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 제외) PCB (저전압 회로용 제외) 전동기 전동기 커패시터 직류 전동기 (DC 42V 이하는 제외) 솔레노이드 / 솔레노이드 밸브 (저전압 or DC용 제외) 고전압 변압기 인버터 LCD 패널 오프터 커플러 (2차측이 노출 되고 1,2차 사이에 사용되는 경우만 등록) 히터용 램프 모니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전원코드
		② 전기드라이버	꽃음플러그
		③ 전기그라인더	전파장해역제용
		④ 전기해머	전원필터
		⑤ 전기잔디깎이	X-커패시터
		⑥ 전기못총	Y-커패시터
		⑦ 기타 전동공구	퓨즈
			퓨즈홀더(외장형)
	온도퓨즈		
	누전차단기 /		
	배선용차단기		
	스위치(저전압용 스위치 제외)		
	전압선택스위치		
	인터록 스위치		
	리튬배터리 (인증비대상 배터리 제외)		
	비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전자 개폐기/ 전자		
	접촉기		
	과전류 계전기		
	릴레이		
	변압기		
	외곽재질 (장식부등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 제외)		
	PCB (저전압 회로용		
	제외)		
	모터		
	모터 커패시터		
	직류 모터 (제품 특성에		
	따라 등록 여부 다름)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오퍼 커플러 (2차측이 노출 되고 1,2차 사이에 사용되는 경우만 등록)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카메라	① 비디오카메라	전원코드세트
	나. 튜너	① 튜너	전원전선
	다. 라디오수신기	① 라디오수신기	플러그
	라. 리시버	① 리시버	상호연결커플러(인렛)
	마. 음성기록계	① 음성기록계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바. 음성플레이어	① 음성플레이어	전파방해역제용
	사. 위성방송수신기	① 위성방송수신기	전원필터(인렛)
	아. 비디오폰	① 비디오폰	콘센트
	자. 음질조절기	① 음질조절기	X-커패시터
	차. 신호변환장치	① AD/DA 변환장치	Y-커패시터
	카. 컴프레서 게이트	① 컴프레서 게이트	Coupling Capacitor
	타. 전자시계	① 전자시계	퓨즈
	파. CCTV 카메라	① CCTV 카메라	퓨즈홀더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①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온도퓨즈
	거. 영상기록기	① 영상기록기	기기보호용차단기
	너. A/V신호수신기	① A/V신호수신기	안정기
	더. CATV방송수신기	① CATV방송수신기	자동온도조절기
	러. 턴테이블	① 턴테이블	스위치
	머. 모듈레이터	① 모듈레이터	조명기구용Converter
	버. 비디오게임기구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 표시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된다)	램프홀더
	비고: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Rechargeable Li-ion Battery Pack 직류전원장치 전파방해역제용 전원필터 상호연결커플러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Laser pick-up 전자개폐기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①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Fusible Resistor
	어. 앰프	① 앰프 ② 앰프 내장형 스피커	Discharge Resistor Bridge Resistor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저. 편집기	① 편집기(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릴레이 변압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① 음성 및 영상분배기	Opto Coupler
	커. 영상전송기	① 영상전송기	히터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PCB Line Filter AC 전동기 DC Fan 전동기 Varistor 고전압 변압기 Inverter Unit Ballast Unit PTC Thermistor 램프 CRT/PDP/LCD Surge protector SMPS(내장형)
	터. 그 밖에 가목에서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스캐너	① 스캐너	전원코드세트
	나. 지폐계수기	① 지폐계수기	전원전선
	다. 금전등록기	① 금전등록기	플러그
	라. 어학실습기	① 어학실습기	상호연결커플러(인렛)
	마. 전자칠판 및 보드	① 전자칠판 ② 전자보드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
	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① 동전계수기	전파방해억제용
	사. 전동타자기	① 전동타자기	전원필터(인렛)
	아. 전기소자기	① 전기소자기	콘센트
	자. 교통카드 충전기	① 교통카드 충전기	X-커패시터
	차. 번호표 발행기	① 번호표 발행기	Y-커패시터
		② 티켓 발행기	Coupling Capacitor
		③ 순번대기기	퓨즈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 포함)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 선 설비의 기기(HF 주파수 대 기기)	퓨즈홀더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 선 설비의 기기(VHF/UHF 주파수대 기기)	온도퓨즈 기기보호용차단기 안정기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10. 정보·통신·사무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자동온도조절기 스위치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조명기구용컨버터 램프홀더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Rechargeable Li-ion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Battery Pack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직류전원장치
		③ 무선 헤드셋	전파방해억제용
		④ IP 주소 공유기	전원필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상호연결커플러 누전차단기
	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배선용차단기 Laser pick-up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 변환기	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 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	전자계폐기 Fusible Resistor Discharge Resistor Bridge Resistor
	너. A/D 및 D/A 신호변환기	① A/D 및 D/A 신호변환기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릴레이 변압기 Opto Coupler 히터
	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등)	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외함(플라스틱, 금속 등) PCB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AC 전동기 DC Fan 전동기
	러. 차단기	① 차단기	Varistor
	머. 실물화상기	① 실물화상기	고전압 변압기
	버. 입체영상기	① 입체영상기	Inverter Unit Ballast Unit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 동형 무선통신 기기	① 휴대폰	PTC Thermistor	
	② 스마트폰	램프	
	③ TRS 휴대폰	CRT/PDP/LCD Surge protector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 된다.		SMPS(내장형)	
어.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	① 전화기(유선 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제품분류	품목명	세부내용	
		세부품목	부품리스트
	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화기, 자동 응답기 등)	
	저. 팩시밀리기기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① 홈오도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①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①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고.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①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노 원격제어방송기기	① 원격제어방송기기	
	도그 밖에 가목에서 너목까지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외함재질

비고: 용·복합 신기술 제품 등 해당 제품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위의 안전관리부품 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할 수 있다.

[별표 21]

전기용품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제39조,제46조 관련)

제 품 분 류		검 사 항 목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		(1) 표시 (2) 구조 (3) 단자(종류) (4) 부품
나. 절연변압기		(1) 표시(허용공차 포함) (2) 온도상승(사용률) (3) 부품
다. 전기기기류		(1) 표시 (2) 입력 및 전류 (3) 구조검사(부품)
라.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1) 표시 (2) 구조검사(부품)
마. 정보·통신·사무기기		(1) 표시 (2) 입력 및 전류 (3) 구조검사(부품)
바. 조명기기	형광램프용스타터	(1) 표시 (2) 치수
	백열등기구	(1) 표시 (2) 구조검사
	방전램프	(1) 표시 (2) 베이스(치수) (3) 광학적 특성
	기타램프(백열전구)	(1) 표시 (2) 치수 (3) 초특성
사. 전지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 표시 (2) 구조검사(부품명세서)

비고: 상기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유사 제품분류를 인용하여 적용한다.

[별표 22]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 시험항목(제55조 관련)

분 류	시 험 항 목
7. 전기기기 8. 전동공구 11. 조명기기	가. 표시 및 사용설명서 나.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다. 온도상승 라. 누설전류 마. 절연내력 바. 이상운전 사. 기계적 강도 아. 내부배선 자. 접지접속 차.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카. 내부식성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표시사항 및 사용설명서 나. 안전인터록 다. 온도상승 라. 감전보호에 관한 요구사항(접촉전류) 마. 정상동작 상태에서의 감전의 위험성 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사. 이상상태 아. 기계적 강도 자.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차. 전기적 접속 및 기계적 고정 카. 안정도 및 기계적 위험
10. 정보·통신 · 사무기기	가. 표시 및 취급설명서 나. 감전 및 위험 에너지로부터의 보호 다. 안전 초저전압회로 검사 라. 접지연속성 마. 안전인터록 검사

분 류	시 험 항 목
	바. 배선 및 접속에 관한 일반사항 사. 주전원의 차단 아. 기계적 강도 자. 세부구조검사 차. 온도상승시험 카. 접촉제 노화성 시험 타. 누설전류 측정 파. 내전압 시험 하. 이상상태 시험(전동기이상상태, 변압기이상상태 및 모의고장 등) 거.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4]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제60조 관련)

구 분	범 위	세부범위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가. 변압기(트랜스포머)1차측 입력회로 부분	-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다. 광접합소자(포토커플러)	-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 (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
	나. 온도과상승방지장치	-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 (플라이백트랜스포머)	-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가. 전동기	-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 장치인 마그네틱클러치	-
4. 전기적·열적·기계적·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가. 교류전압 30V이상, 직류전압 60V 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 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
	나. 회로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

[별표 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 관련)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선 및 전원코 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절연전선	K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227-2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2부: 시험방법
			K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3부: 배선용 절연전선
			KC 60245-1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고무절연케이블,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245-2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고무절연케이블, 제2부: 시험방법
			K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고무절연케이블, 제3부:내연 실리콘 고무절연케이블
		케이블	K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227-4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4부 : 고정배선용 시스템 케이블
			KC 60227-6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리프트 케이블과 연결용 유연성케이블
			KC 60227-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7부 : 2심 또는 다심의 차폐 및 차폐 유연성 케이블
			KC 60245-1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고무절연케이블,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4부 : 코드 및 가요케이블
			KC 60245-5	정격전압450V/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5부: 리프트케이블
			KC 60245-6	정격전압 450V/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제6부: 아크용접용 케이블
			KC 60245-7	정격전압 450V/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제7부: 내열성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KC 60502-1	정격전압 1kV(Um=1.2kV)~30kV(Um=36kV) 이하 압출성형 절연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정격전압 1kV(Um=1.2kV)~3kV (Um=3.6kV) 이하의 케이블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KC 10028	정격전압 450V/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가교 실리콘고무절연 다심케이블		
			KC 60702-2	정격전압 750V 이하 무기물 절연케이블 및 단말부 제2부 : 종단부		
		코드	K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227-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5부: 가요케이블(코드)		
			KC 60245-1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고무절연케이블,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제4부 : 코드 및 가요 케이블		
			KC 60245-8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제8부 : 고 유연성 전기기기용 코드		
		코드세트	KC 60799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연결 코드셋		
		전기기기용스위치	스위치	전기기기용 스위치	KC 61058-1	기기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전기설비용 스위치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코드 스위치	KC 61058-1	기기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1058-2-1	기기용 스위치 제2-1부 : 코드스위치의 개별 요구사항
				전자식 스위치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669-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2-1부: 전자스위치 개별요구사항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669-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 제2부 : 개별요구사항 제2절 : 리모트 콘트롤 스위치(R.C.S)		
시간지연 스위치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669-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 제2-3부 : 지연스위치 개별요구사항		
조광기	K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669-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제2-1부: 전자스위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자개폐기	제어회로용 스위치	K 6094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	
			K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	KC 60947-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K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
				K 61095	가정용과 유사 용도를 위한 전기 기계적 접촉자
		전원용 커패시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X·Y 커패시터	KC 60384-1
KC 60384-14	전자기기용 고정 캐패시터 제14부 : 전기자기 장해 억제 및 주전원 연결용 커패시터				
전과장해 억제용 전원필터	전원필터			KC 60939-1	전자과장해 방지용 필터소자 제1부: 품목규격
				KC 60939-2	전자과장해 방지용 필터소자 제2부:품종규격-시험방법의 선택과 일반사항
형광등용 커패시터	형광등용 커패시터			KC 61048	램프 보조장치 형광램프 및 방전램프용 커패시터-일반 및 안전
				KC 61049	형광등과 방전램프 회로에 쓰이는 캐패시터 -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전기설비용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기기용 접속기류	KC 60320-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065	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상호연결커플러	상호연결커플러	KC 60320-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320-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기기용 커플러 제2-1부: 재봉기커플러
				K 60320-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2부: 가정용 및 유사설비의 상호연결 커플러
				KC 60320-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2-3부:보호등급이IPX0이상인기기용커플러
		플러그 및 콘센트	플러그 및 콘센트	KC 6088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 60884-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1부: 퓨즈형 플러그의 개별 요구사항
				KC 60884-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2부: 기기용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KC 60884-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3부: 고정 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KC 60884-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4부: SELV의 플러그와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KC 6088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5부: 어댑터의 개별요구사항		
			KC 6088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6부: 고정 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K 10026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케이블릴	KC 61242	전기용부속품-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케이블릴		
		전기용 품보호 용부품	퓨즈	퓨즈	KC 60127-1	소형 퓨즈 : 소형 퓨즈의 정의 및 소형 퓨즈링크의 일반 요구사항
					KC 60127-2	소형 퓨즈 제2부 : 통형 퓨즈링크
					KC 60127-3	소형 퓨즈 제3부 : 초소형 퓨즈링크
					KC 60127-4	소형 퓨즈 제4부 : 유니버설 모듈 퓨즈링크
					KC 60127-6	소형 퓨즈 제6부 : 소형 퓨즈링크용 퓨즈홀더
온도퓨즈	KC 60691			온도 퓨즈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차단기	기기보호용 차단기		KC 60394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배선용 차단기	KC 608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 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KC 6094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	
	KC 60947-2			저압 개폐 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누전 차단기		KC 6094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		
				KC 60947-2	저압 개폐 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KC 6100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100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절연변 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압조정기	KC 61558-1
KC 61558-2-13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한기기의 안전 제2-13부 : 범용단권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소형변압기	KC 61558-1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1부 : 일반요구 사항 및 시험
			KC 61558-2-13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2-13부 : 범용 단권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교류어댑터	KC 61558-1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1558-2-6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2-6부 : 범용 절연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물흡입청소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바닥청소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부 : 마루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표면세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 액체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 사항
		스팀청소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9부: 산업용과 상업용의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스팀해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 액체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 사항
		고압세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9부 : 산업용과 상업용의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의 개별 요구 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 사항	
		스팀다리미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 사항	
		바지프레스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 펴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주름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335-2-8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85부 : 직물용 전기 스티머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	
		다림질프레스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 펴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오븐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거치식그릴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호브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콘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3부 : 전기 튀김기, 전기 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가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토스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프라이팬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3부 : 전기 튀김기, 전기 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휴대형그릴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고기구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와플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핫플레이트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세탁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 세탁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탈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4부 : 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 사항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머리인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모발말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주온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온장고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 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주서믹서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후드믹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녹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크림거품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계란반죽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혼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버터제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압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슬라이스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칼같이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강통따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칼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커피분쇄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빙삭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고기갈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국수제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육절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골절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액체가열기기	전기밥솥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보온밥솥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주전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냄비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물끓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약탕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커피메이커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스팀쿠커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달걀조리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우유가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젓병가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요구르트제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요	전기요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매트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카펫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장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침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침대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방석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찜질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발보온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1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온수기	전기온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순간온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 순간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냉장·냉동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제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아이스크림 프리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냉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5부 : 전자레인지의 겨별 요구 사항
		전기충전기	전기충전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손건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건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요구사항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열보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라디에이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온풍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축열식 전기난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1부 : 축열식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구모양 히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 사항
		펠릿 스토브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2부 : 전기를 사용하는 가스, 오일 및 고체연료 연소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마사지기	전기마사지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냉방기	냉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 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 사항
	유체펌프	유체펌프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 전기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온수펌프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 전기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가열기기	납땀인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납땀제거인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권총형납땀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열가소성도관용접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필름접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플라스틱절단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페인트제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가열총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조각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일반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휴대형 가열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일반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개별 요구 사항
		전기욕조	소용돌이욕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0부 : 전기 기포 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반신·전신욕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반신욕조 및 이와 유사한기기의개별요구사항	
			K 10002	반신욕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발욕조		KC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전기기기 의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발욕조 및 이와 유사한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 10003	발욕조 및 이와 유사한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송풍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환풍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레인지후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1부 :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냉풍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변좌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오물흡입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가습기	가습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8부 :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기타 유사기기	기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드릴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부 : 전기드릴의 개별요구사항
		전기드라이버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2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및 임팩트렌치의개별요구사항
		전기그라인더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3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및 디스크샌더의개별요구사항
			KC 61029-1	이동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1029-2-4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4부 : 탁상 그라인더의 개별요구사항
		포리셔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3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및 디스크샌더의 개별요구사항
			KC 60745-4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4부 : 원반형 외의 전기샌더, 포리셔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샌더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3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및 디스크샌더의 개별요구사항
			KC 60745-4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4부 : 원반형 외의 전기샌더, 포리셔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원형톱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5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5부 : 원형톱의 개별요구사항
		전기해머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6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6부 : 전기해머의 개별요구사항
		전기금속가위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8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8부 : 전기가위 및 니블러의 개별요구사항
		전기테이퍼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9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9부 : 전기 테퍼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왕복톱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1부 : 전기 왕복톱(지그톱 및 사브레톱)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진동기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2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2부 : 전기콘크리트 진동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체인톱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3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3부 : 전기체인톱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대패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4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4부 : 전기대패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전기잔디깎기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5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5부 : 가지치기 및 제초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전기못총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6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6부 : 태커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라우터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반요구사항
			KC 60745-2-17	수지형전동공구 안전성 제2-17부 : 전기라우터 및 트리머의 개별요구사항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KC 60745-1	수지형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직류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기타 유사기기	기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조명기기	램프홀더	형광램프 홀더	K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홀더
		에디슨나사형 홀더	KC 60238	에디슨 나사형 소켓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기타 램프홀더	KC 60838-1	기타 램프소켓 제1부 :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KC 60838-2-1	기타램프 소켓 제2부 : 제1절 : 램프소켓 S14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C 60838-2-2	기타램프 소켓 제2-2부 : LED 모듈형 커넥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 61184	꽃음형 램프소켓
		형광등용 스타터홀더	K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홀더
	일반조명기구	형광등기구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PLS조명기구	K 10006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안전요구사항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LED등기구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 1002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 - 안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할로젠등기구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고압방전등기구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투광조명기구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5	등기구 제2-5부 : 투광조명기구-개별요구사항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형광램프용	KC 61347-1	램프구동장치-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KC 61347-2-8	램프구동장치 제2-8부 : 형광램프용 안정기에 대한개별요구사항
	K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 요구사항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KC 61347-1	램프구동장치-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KC 61347-2-9	램프구동장치 제2-9부 : 방전등용안정기-개별요구사항	
KC 60923				방전램프용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나트륨 램프용	KC 61347-1			램프구동장치-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KC 61347-2-9			램프구동장치 제2-9부 : 방전등용안정기-개별요구사항		
	KC 60923			방전램프용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수은램프용	KC 61347-1	램프구동장치-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KC 61347-2-9	램프구동장치 제2-9부 : 방전등용안정기-개별요구사항	
			KC 60923	방전램프용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형광램프용	KC 61347-1	램프 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3	램프구동장치 제2-3부 :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개별요구사항	
			K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성능요구사항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KC 61347-1	램프 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12	방전램프용(형광램프제외) DC/AC전원공급 전자식 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나트륨 램프용	KC 61347-1	램프 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12	방전램프용(형광램프제외) DC/AC전원 공급 전자식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수은램프용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12	방전램프용(형광램프제외) DC/AC전원 공급 전자식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조명기구용컨버터	할로겐램프용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2	램프구동장치 제2-2부: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입력 전자식 강압컨버터의 개별요구사항
				KC 61047	필라멘트램프용 직류 또는 교류 입력전자식 강압컨버터 - 성능요구사항
			LED용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 LED모듈용 DC/AC 전원전자구동장치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직관형LED 램프용 컨버터외장형	KC 61347-1	램프 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 LED모듈용 DC/AC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네온변압기	자기식	KC 61050	무부하 출력전압이 1000V초과하는 관형방전램프용변압기(네온변압기)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전자식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C 61347-2-10		램프구동장치 제2-10부 : 고주파 냉음극방전관 (네온관)용 전자식인버터 및 컨버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K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요구사항
				K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요구사항
				K 10023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기기 기용스 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온도조절기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30-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장치-온도감지제어장치
		온도과승방지장치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30-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온도감지제어장치
		자동압력스위치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일반요구사항
			KC 60730-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자동압력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일반요구사항
			KC 60730-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모터기동 릴레이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30-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모터기동릴레이
		에너지레귤레이터	K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30-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에너지조절기
절연변 압기	고주파웰더	고주파웰더	K 60974-1	아크용접기 제1부 : 용접 전원
	전기용접기	전기용접기	K 60974-1	아크용접기 제1부 : 용접 전원
		권총형 아크접착기	K 60974-1	아크용접기 제1부 : 용접 전원
전기기 기	과일껍질깎이	과일껍질깎이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용해기	와스 용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초코렛 용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파라핀 용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이미용기기	두피모발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삼푸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모발가습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손톱정리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면도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이발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안면사우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이발용의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동침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침대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온열의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각도조절의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컴프레서	컴프레서	KC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3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전동 압축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K 10019	전기온수매트 및 침대용 전기보일러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온수 침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K 10019	전기온수매트 및 침대용 전기보일러의 개별 요구사항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2부 : 전기구강위생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구강세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2부 : 전기구강위생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해충퇴치기	해충퇴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개별 요구 사항
		전기포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개별 요구 사항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 사항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 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 사항
		수하물보관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 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 사항
		지폐교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 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 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동전교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 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에어커튼	전기에어커튼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팬코일유닛	팬코일유닛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폐열 회수 환기장치	폐열 회수 환기장치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 사항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인형뽑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다트판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농구게임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기타게임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식기세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
			KC 60335-2-5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8부: 상업용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식기건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
			K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상업용 전기보온찬장의 개별요구사항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1부 : 전기훈증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전기방향확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1부 : 전기훈증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수도 동결 방지기	수도 동결 방지기	KC 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3	가정용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수도동결방지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산소이온발생기	산소이온발생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정수기	전기정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정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이온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이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과일야채세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기타 전기세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오존수 발생장치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이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헬스기구	전기헬스기구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헬스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1851-22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 교류 충전장치
			KC 61851-23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 직류 충전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K 62477-1	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PECS)-제1부 : 일반
	가정용 전동재봉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8부 : 전기 재봉기의 개별 요구 사항
	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3부: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사우나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3부: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사우나기기용전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3부: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스팀사우나용전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3부: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60335-2-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1부 :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연못용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관상용 전기어항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연못용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기포발생기	기포발생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연못용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 사항
		이온발생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분무기	전기분무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산업용과 상업용 분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포장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물수건포장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물수건마는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물수건 마는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주서믹서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후드믹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녹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크림거품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계란반죽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혼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버터제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압즙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슬라이스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커피분쇄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빙삭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발보온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1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손난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K 1002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방석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온열시트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 전기 살충기의 개별 요구 사항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소독기	전기소독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7000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제습기	제습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 사항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기타 유사기기	기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오디오 비디오 기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철판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디스크플레이어	디스크플레이어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오디오시스템	오디오시스템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전자악기	전자악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오디오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영상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기타 유사기기	기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정보· 통신· 사무기 기	모니터	모니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모니터 내장형 전자철판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프린터	프린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프로젝터	프로젝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문서세단기	문서세단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천공기	천공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제분기	제분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스태이플러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복사기	복사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K 62040-1	무정전 전원 시스템 제1부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디지털TV	디지털TV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코팅기	코팅기	K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K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태블릿 PC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전지	전지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K 10024	소형 밀폐 2차 전지의 유해 물질 안전
기타 유사기기	기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백열등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상테리아등	KC 60598-1	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방전램프	형광램프	KC 61195	이중 형광램프 - 안전	
			K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K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K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 - 성능	
		무전극램프	K 10005	무전극 형광램프에 관한 안전 요구사항	
		수은램프	KC 62035	방전램프 - 안전요구사항(형광램프 제외)	
			KC 60188	고압 수은램프 - 성능	
		메탈할라이드램프	KC 62035	방전램프 - 안전요구사항(형광램프 제외)	
			KC 61167	메탈헬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KC 62035	방전램프 - 안전요구사항(형광램프 제외)	
			K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KC 60192	저압나트륨램프-성능	
		기타 조명기구	체인형 조명기구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20	등기구 제2-20부 : 체인형 조명기구 개별요구사항
			충전식휴대전등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8	조명기구 제2-8부 충전식 휴대전등의 안전 요구 사항
	투광조명기구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5	등기구 제2-5부 : 투광조명기구-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할로겐등기구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이동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기타 램프	백열전구	KC 60432-1	백열전구 - 안전 제1부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KC 600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일반 조명용의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 성능 요구사항
		LED램프(모듈)	K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안전 요구사항
			KC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컨버터 내장형
		할로겐전구	KC 60432-2	백열전구(텅스텐전구) - 안전 제 2 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할로겐 전구
			KC 60432-3	백열전구(텅스텐전구) - 안전 제 3 부 텅스텐 할로겐 램프 (비차량용)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기기	감자탈피기	감자탈피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정미기	전기정미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 빵 자르개	전기 빵 자르개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 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애완동물 목욕기	애완동물 목욕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애완동물 목욕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 주류 숙성기	전기주류숙성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기시계	전기시계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6부: 전기시계의 개별 요구사항
	적외선·자외선 방사피부관리기	적외선방사피부관리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7부 : 피부관리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방사기의 개별요구사항
		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7부 : 피부관리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방사기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분수기	전기분수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투영기	슬라이드투영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필름스트립투영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OHP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필름투영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착유기	착유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7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0부 : 전기 착유기의 개별 요구사항
		보풀 제거기	보풀 제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개별요구사항	
	전기작동 도어록	전기작동 도어록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 100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 전기작동 도어록의 개별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 사항	
		이온발생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전동형 롤스크린	전동형 롤스크린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7부 : 회전식 셔터, 차양, 블라인드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기타 유사기기	기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전기드릴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부 : 전기드릴의 개별요구사항
			전기드라이버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2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스크류 드라이버 및 임팩트렌치의 개별요구사항	
전기그라인더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3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및 디스크샌더의 개별요구사항	
			KC 61029-1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1029-2-4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4부 : 탁상그라인더의 개별요구사항	
전기해머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6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6부 : 전기해머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잔디깎기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5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5부 : 가지치기 및 제초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전기못총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745-2-16	수지형 전공구의 안전 제2-16부 : 태커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기타 전동공구			기타	KC 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튜너	튜너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라디오수신기	라디오수신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리시버	리시버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음성기록계	음성기록계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음성플레이어	음성플레이어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위성방송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비디오폰	비디오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음질조절기	음질조절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신호변환장치	AD/DA 변환장치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컴프레서 게이트	컴프레서 게이트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전자시계	전자시계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영상기록계	영상기록계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A/V신호수신기	A/V신호수신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CATV방송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턴테이블	턴테이블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모듈레이터	모듈레이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비디오게임기구	비디오게임기구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앰프	앰프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앰프내장형스피커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편집기	편집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음성 및 영상분배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영상전송기	영상전송기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기타 유사기기	기타	KC 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정보·통신·사무기기	스캐너	스캐너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지폐계수기	지폐계수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금전등록기	금전등록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어학실습기	어학실습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전자칠판및보드	전자칠판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전자보드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동전계수기	동전계수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전동타자기	전동타자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전기소자기	전기소자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교통카드 충전기	교통카드 충전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번호표 발행기	번호표 발행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티켓 발행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순번대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생활무선국용무전기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1부 : 일반 요구사항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음성·음향신호및 기타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무선스피커 시스템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무선 헤드셋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IP 주소 공유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장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단말장치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A/D 및 D/A 신호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지상파텔레비전 방송 신호처리기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재단기	재단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실물화상기	실물화상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입체영상기	입체영상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휴대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스마트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TRS 휴대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화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전화기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팩시밀리기기	팩시밀리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홈오토메이션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비디오도어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단말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단말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현금자동취급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금융단말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내비게이션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기타 유사기기	기타	K 60950-1(2.0)	정보기술기기-안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KC 60155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및안전요구사항
			KC 61347-2-1	램프 구동장치 제2-1부 : 시동장치(글로우스타터 제외)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C 60927	시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일회성제품의 시료채취 방법(제65조 관련)

1. 시료채취방법: KS Q 1003에 따른다.
2. 검사방법: 시료의 크기(n) 및 합부판정 조건[합격판정 개수(Ac), 불합격판정 개수(Re)]은 다음에 따른다[시료의 크기(n) : 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반복 시험하는 횟수]

품목명	시료크기 및 판정			비 고
	외관	구조·치수	성능	
①가스라이터	KS Q ISO 2859-1, S-4, AQL(합격품질수준) : 2.5% (단, 일반용 가스 라이터는 S-2 적용)]	n=5 (단, 일반용 가스 라이터 n=3) Ac=0 Re=1	제품검사의 안전기준과 동일	* 검사물량이 25개 미만일 경우에는 외관, 구조, 치수 또는 성능 검사에 대한 시료의 크기(n)는 1로 한다. (즉, n=1).
②비비탄총	KS Q ISO 2859-1, S-3, AQL : 2.5%	n=4 Ac=0 Re=1	제품검사의 안전기준과 동일	
③가정용압력 냄비 및 압력솥	KS Q ISO 2859-1, S-2, AQL : 2.5%	n=3 Ac=0 Re=1	제품검사의 안전기준과 동일	
④물놀이기구				
⑤자동차용 재생타이어				
⑥조속기 ⑦비상정지장치 ⑧완충기 ⑨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⑩승강장문 잠금장치 ⑪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KS Q ISO 2859-1, S-1, AQL : 2.5%	n=1 Ac=0 Re=1	제품검사의 안전기준과 동일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제70조 관련)

1. 검사설비 목록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경도계	·고무노화시험기
	·치수측정기	·인장 및 박리시험기
	·스틸코드검사기 ¹⁾	·타이어강도시험기
	-	·비이드이탈시험기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치수측정기	·인장시험기
	·압력조정장치 작동시험기	·위생성 시험설비
	·안전장치 작동시험기	·화학분석설비
	·내압 및 패킹누수시험기	-
	·표면온도계	-
3. 가스라이터	·불꽃점화측정기	·압력시험장비
	·치수측정기	·저온시험장비
	·저울	-
	·푸시풀게이지	-
	·초시계	-
	·낙하시험장비	-
	·조립강도기	-
	·온도시험장비	-
4. 물놀이기구	·치수측정기	·만능재료시험기
	·두께측정기	·가열감량시험기
	·용적측정기	·내한성시험기
	·하중추	·노화시험기
	·푸시풀게이지	·내후시험기
	·완제품하중시험기	·오존열화시험기
	-	·염수분무시험기
	-	·부력측정시험기
	-	·유해분석시험기
	-	·안정성시험기
5. 비비탄총	·치수측정기	·가스압력계
	·저울	-
	·푸시풀게이지	-
	·낙하시험기	-
	·오븐기(가스건에 한 함)	-
	·속도측정기	-
6. 조속기	·버니어캘리퍼스	·만능재료시험기
	·조속기 트립시험기(속도)	
	·조속기 견인력시험기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7. 비상정지장치		·버니어캘리퍼스	·Test Tower(제품시험가능사양)
		·경도계	·속도계
		·진동계	·기록계
			·프레스시험기
			·분동(weight)
8. 완충기		·버니어캘리퍼스	·Test Tower(제품시험가능사양)
		·진동계(유입식)	·속도계
			·기록계
			·분동(Weight)
9. 승강장문 잠금장치		·버니어캘리퍼스	·회로차단시험기
		·전류계	·내트랙킹시험기
		·전압계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내구성시험기	
10. 상승과속 방지장치	가이드레일 제동형	·버니어캘리퍼스	·Test Tower(제품시험가능사양)
		·진동계	·기록계
		·속도계	
	로프 제동형	·압력계(유압식)	·Test Tower
		·버니어캘리퍼스	·기록계
		·절연저항계	·분동
		·전류계	
		·전압계	
		·진동계	
		·속도계	
	이중 브레이크	·버니어캘리퍼스	·Test Tower
		·절연저항계	·기록계
		·전류계	·분동(weight)
		·전압계	
		·내전압시험기	
		·토크렌치	
		·진동계	
·속도계			
11.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토크렌치	·Test Tower	
	·진동계	·기록계	
	·속도계	·분동(weight)	

***비고**

- 해당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는 설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당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p>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p> <p>3. 검사설비 중 외주가능 설비에 대하여는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로 관리하고 있거나, 설비사용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본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주¹⁾ 페타이어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장비를 말하며, 스틸코드검사기와 동등 이상의 검사기능을 갖는 장비(X-ray 검사장비 등)를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다.</p>		

2. 품목별 제조설비 목록

품목명	제조설비명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고무배합기(원자재 제조시 한정함)	
	·고무압연기(원자재 제조시 한정함)	
	·고무압출기(원자재 제조시 한정함)	
	·고무풀제조기	
	·고무풀도포기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절단기	
	·성형기	
	·연마기	
	·조립설비	
3. 가스라이터	·사출기	
	·가스용착설비	
	·가스주입설비	
	·불꽃검사기	
4. 물놀이기구	·성형기	
5. 비비탄총	·사출기(냉각설비 포함)	
	·조립설비	
6. 조속기	·주물제작설비	
	·절단기	
	·선반	
	·드릴링머신	
7. 비상정지장치	·주물제작설비	
	·절단기	
	·선반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8. 완충기	·절단기	
	·프레스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9. 승강장문 잠금장치	·절단기	
	·드릴링머신	
	·태핑머신	
	·밀링머신	
	·용접설비	
10. 상승 과속 방지 장치	가이드 레일 제동형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용접설비
		·도장설비
		·벤딩머신
	로프 제동형	·절단기
		·프레스
		·선반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품목명	제조설비명		
	이중 레이크	· 절단기	· 밀링머신
		· 프레스	· 태핑머신
		· 함침기	· 도장설비
		· 선반	· 권선기(코일)
		· 드릴링머신	
11.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 드릴링머신	· 선반	
	· 밀링머신	· 프레스	
	· 용접설비	· 널링머신	
	· 도장설비	· 절단기	
<p>* 비고</p> <p>1. 해당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는 설비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2. 제조설비 중 외부설비를 활용여부에 대하여는 제품의 생산규모 등에 따라 업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외부설비를 활용할 경우 외주관리를 하여야 한다.</p>			

[별표 28]

생활용품의 자체검사(제70조, 제78조 관련)

1. 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명	원자재 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	·경도 ·비중 ·인장강도 ·신장률	1. 주 자재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규격수준 이상으로 시험검사한 후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선의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쿠션용고무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멤용고무(사용할 경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고무풀용 고무(사용할 경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용제(사용할 경우)	·비중 ·비등점	
	·재생용 타이어	·겉모양 ·홈집의 크기 및 개소 ·세퍼레이션 ·비이드절손 ·기타결점 ·스틸코드검사	
2. 가정용 압 력냄비 및 압력솥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4.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5. 자재의 검사 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6. 사내 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
	·알루미늄합금 자재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스테인리스 강봉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열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냉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조립부품(보울트, 너트, 스프링류등)	·겉모양 ·종류		

품목명	원자재 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치수	<p>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p> <p>7. 새로운 자재투입 시 마다 검사주기로 하고 1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p> <p>8. 원자재의 검사는 공급업체에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p>
	·합성수지품 또는 고무류	·겉모양 ·치수 ·위생성	
	·손잡이재료	·겉모양	
3. 가스라이터	·원료(수지)	·조성률	
	·라이타용 가스	·배합비	
4. 물놀이기구	·원단(PVC, 고무등)	·두께 ·인장절단하중 ·인열강도 ·가열감량 ·내한성 ·오존열화시험 ·유해원소의 용출	
	·공기마개(벨브)	·기능	
	·노받이 및 노	·강도	
	·줄 및 끈류	·치수 및 강도	
	·금속	·내식성	
	·버클 및 기타부착물	·기능	
	·작은부품	·강도	
5. 비비탄총	·부력제(폼)	·열안전성 ·압축성	
	·프라스틱수지	·물리적성질	
	·탄환	·무게 ·직경	
	·스프링	·탄성	
6. 조속기	·실린더 등 부품	·강도시험	
	·속도 진자스프링	·스프링상수	
	·인발력 스프링	·스프링상수	
	·도르래	·경도	
7.	·과속 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롤러	·표면경도	

품목명		원자재 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비상 정지 장치	시 형	·블록	·치수	
	점 차 형	·스프링 (U/디스크/코일)	·스프링상수 ·치수	
		·썰기(Gib, Wedge)	·표면경도	
		·조오(Jaw)	·표면경도	
		·블록	·치수	
		·안전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8. 완충기	스프 링식	·스프링	·스프링상수 ·치수	
	유 입 식	·스프링	·스프링상수 ·치수	
		·플린저	·표면 거칠기 ·치수	
		·실린더	·표면 거칠기 ·치수	
		·오일게이지	·구조	
		·안전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9. 상승 과속 방지 장치용 브레 이크	로프 브레 이크	·스프링	·스프링상수 ·치수	
		·라이닝	·표면경도 ·치수	
		·유(공)압 유니트	·정격압력 ·정격유량	
		·블록	·구조 ·치수	
		·안전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이중 브레 이크	·스프링	·스프링상수 ·치수	
		·라이닝	·표면경도 ·치수	
		·코일박스	·정격전압 ·정격전류 ·절연저항	
		·드럼(디스크원판)	·구조 ·치수	

품목명		원자재 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축	·인장강도 ·경도		
		·안전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양방 향 비상 정지 장치	·스프링 (U/디스크/코일)	·스프링상수 ·치수		
		·썰기(Gib, Wedge)	·표면경도		
		·조오(Jaw)	·표면경도		
		·블록	·치수		
		·안전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절연물질		·내트랙킹
	10. 승강 장문 잠금 장치	중양 (측면) 개폐 방식	·접점		·재질 ·구조
			·칼 및 칼받이		·구조
·스프링			·스프링상수 ·치수		
·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절연물질	·내트랙킹	
상승 개폐 방식			·접점	·재질 ·구조	
		·칼 및 칼받이	·구조		
		·스프링	·스프링상수 ·치수		
		·솔레노이드	·정격전압 ·정격전류 ·스위칭시간		
			·스위치	·정격전압 ·정격전류 ·IP등급	
		11. 에스컬레 이 터 용 역주행 방지장치	·감지기	·구조 ·모델명 ·전압/전류	
·입출력단자					
·안전회로기관	·연면거리 ·전압 ·모델명				
	·작동부		·구조		

품목명	원자재 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 전압/전류 · 동작상태 	
	· 제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외관 · 치수 · 용접상태 · 전기적 동작 확인 스위치 	

2.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품목명	공정검사 항목		검사방법		
	공정명	항목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풀 제조 · 성형공정 · 가황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도 · 겉모양 · 겉모양 	1. 각 공정별로 규정된 검사 항목에 대하여 공정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관재의 경우	· 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치수 	2.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3.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 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치수 		
		· 기계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치수 		
		· 연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력조정장치 · 안전장치 		
	주물 및 지금의 경우	· 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성분 · 온도 	4.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	
		· 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온도 		
		· 기계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치수 		
		· 연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용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 · 압력조정장치 		

품목명		공정검사 항목		검사방법	
		공정명	항목		
			·안전장치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스라이터		·수지 사출가공	·상태		
		·금속부 가공	·상태		
		·조립	·조립강도		
4. 물놀이기구		·원단가공	·치수 ·접착부강도 ·상태	5. 공정검사의 주기는 품목별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야 하나, 로트별로 투입 초기, 중간, 최종 공정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인쇄	·표시사항 ·염소로 소독된소금물에 견디는 정도 ·침시험 ·땀시험 ·접착강도		
		·접합	·구조 ·상태		
5. 비비탄총		·사출(냉각포함)	·표면상태		
		·조립	·구조 ·낙하강도		
6. 조속기		·프레임가공	·외관치수		
		·도르래 조립	·그루브 홈		
		·축 조립	·정렬상태 검사		
		·플라이웨이트 조립	·웨이트 균형 상태 검사		
		·래칫 조립	·래칫 방향		
		·스위치 조립	·스위치 점점확인 ·접지상태		
		·속도 및 인발력 조정	·속도별 스프링 조정 ·인발력 측정		
7. 비상정지장치		즉시형	·블록 가공	·외관치수	
			·롤러 조립	·롤러 홈 형상	
		점차형	·블록 가공	·외관치수	
			·조오 조립	·이동상태 점검	
			·깁 조립	·레일간 간격측정	
			·스프링 조립	·스프링세팅길이 측정	

품목명		공정검사 항목		검사방법
		공정명	항목	
		·조정작업	·제동력 측정 ·깁(Gib)간 거리	
8. 완충기	스프링식	·스프링 인발	·외관치수 ·유효권수	
		·고정판 용접	·용접비드 상태	
	유입식	·실린더 조립	·외관치수	
		·플런저 조립	·원활상태 검사	
		·부싱 조립	·정렬상태	
		·스프링 조립	·수동조작상태 검사	
		·오일게이지 조립	·용접상태 검사	
		·스위치 조립	·전선길이 측정	
9.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축 조립	·치수		
	·드럼(디스크 원판)조립	·치수(유효경, 두께) ·표면거칠기 ·회전방향		
	·모터조립	·권선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브레이크 조립	·접촉상태 ·개방시간 ·코일전압 ·스트로크 ·제동토크 확인		
10. 승강장문 잠금장치	·래칫조립	·직각도 ·치수		
	·롤러조립	·정렬상태 ·베어링상태		
	·접점조립	·은접점 ·수평도 ·스프링상태		
	·스위치조립	·단자압착 상태 ·케이블 고정상태		
11.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감지기	·외관상태		
		·설치상태 및 치수		
		·배선상태		

품목명	공정검사 항목		검사방법
	공정명	항목	
	· 안전회로기관	· 배선상태	
		· 설치상태	
		· 입출력 상태	
	· 작동부	· 설치상태	
		· 전기적 동작 확인 스위치 설치 여부	
		· 동작시 충격 전달 여부	
		· 정전시 동작 여부	
	· 제동부	· 구조	
		· 치수	
		· 제동토크	
		· 조립상태	

3.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

품목명	제품검사 항목	검사방법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1. 최종제품에 대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를 한 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2. 수입, 공정검사와 겹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제품검사를 생략해도 좋다. 3.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4. 시험 검사자가 규격 및 사내 표준에 따라 시험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3. 가스라이터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4. 물놀이기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5. 비비탄총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6. 조속기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7. 비상정지장치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8. 완충기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9.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10. 승강장문 잠금장치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품목명	제품검사 항목	검사방법
11.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5. 검사의 주기는 새로운 로트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단, 유해물질검사는 원자재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9]

생활용품의 석면안전기준(제87조 관련)

1. 목 적 이 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에 대하여 석면 함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석면의 안전요건, 함유량 시험·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경우 해당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구성하며, 이외의 생활용품의 경우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석면 함유 위해성 확인의 기준으로 준용한다.

3.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5725 -1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1부:일반적인 원리 및 정의

KS A ISO 5725 -2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2부:표준 측정 방법의 반복 정밀도 및 재현 정밀도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

KS A ISO 5725 -3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3부:표준 측정 방법의 중간 정밀도

KS A ISO 5725 -4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4부:표준 측정 방법의 진도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

KS A ISO 5725 -5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5부:표준 측정 방법의 정밀도를 구하기 위한 대체법

KS A ISO 5725 -6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6부:정확도에 관한 값의 실용적 사용 방법

ISO 10312 Ambient air - Determination of asbestos fibres - Direct transfer transemissions electron microscopy method

ISO 13794 Ambient air - Determination of asbestos fibres - Indirect transfer transemissions electron microscopy method

ISO 10397 Stationary source emissions - Determination of asbestos plant emissions - Method by fibres count measurement

KS Q ISO 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환경부고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ES 06305.1 석면-편광현미경법

환경부고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ES 06305.2 석면-X선 회절기법

4. 용어의 정의

4.1 최대 허용 함유농도(MCV,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Value, 관리 허용치)

제품 및 구성 물질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석면시험 분석장비의 측정오차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불순물 또는 현재 정제 기술 및 제조 기술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함유될 수밖에 없는 불순물을 고려한 부품 구성 물질 내의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량을 의미하며 국제환경법규나 지역, 국가 등에서 결정된 제한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함유량

(%)으로 산출한다.

4.2 함 유 (contained)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구성 물질에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임을 구분하지 않고 특성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이나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 전, 후 및 공정 중에 추가(added), 혼합(blended with), 채워 넣기(fill up) 또는 부착(adhere to)하는 작업 모두를 의미한다.

4.3 불순물 (Impurities)

자연 상태의 물질(natural material)의 정제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물질 혹은 합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재 기술능력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4.4. 적용 예외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다른 물질로 대체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정량의 석면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5 석면 (Asbestos)

4.5.1 석면의 종류 "석면"이라 함은 다음 표 1과 같이 6가지 물질을 말한다.

표 1. 석면의 종류

물질명	분자식	CAS No*
Actinolite(악티놀라이트석면)	$Ca_2(Mg,Fe)_5Si_8O_{22}(OH)_2$	77536-66-4
Amosite (갈석면)	$(Mg,Fe)_7Si_8O_{22}(OH)_2$	12172-73-5
Anthophyllite(안소필라이트석면)	$(Mg,Fe)_7Si_8O_{22}(OH)_2$	77536-67-5
Chrysotile(백석면)	$Mg_3Si_2O_5(OH)_4$	12001-29-5
Crocidolite(청석면)	$Na_2F_5Si_8O_{22}(OH)_2$	12001-28-4
Tremolite (트리모라이트석면)	$Ca_2(Mg,Fe)_5Si_8O_{22}(OH)_2$	77536-68-6

주)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No: 화학물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4.5.2 석면의 정의

4.5.2.1 석 면 (Asbestos)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한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

4.5.2.2 석면 형태 (Asbestiform) 섬유 길이와 폭의 비율이 5 : 1 이상이고, 더 얇은 섬유로 쪼개질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석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① 섬유묶음 안에 평행한 섬유질이 있을 경우
- ② 섬유묶음 중 닳거나 해진 끝이 존재할 경우
- ③ 가는 바늘 형태의 섬유가 존재할 경우
- ④ 각각의 섬유가 형클어진 덩어리 형태의 뒤틀림을 나타낼 경우

5. 안전 요건

5.1 석면 함유량

- 5.1.1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중 3.2항 사용금지물질에 따라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5.1.2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분말형태로 날릴 수 있는 비산형 제품과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생활용품의 경우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5.1.3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5.1.1 및 5.1.2 이외에 생활용품에도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5.2 텔크의 안전 요건

- 5.2.1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제품에 텔크를 사용하고 5.1.1 또는 5.1.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된 텔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 (KS Q ISO/IEC 17025)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검사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 5.2.2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제품에 텔크를 사용하고 5.1.3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용된 텔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검사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 5.3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대체품으로 한계가 있어 일부 특수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함유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6. 석면 시험방법

- 6.1 제품 중에 함유된 석면은 엑스선회절법(XRD), 편광현미경법(PLM), 주사전자현미경법(SEM 또는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등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6.2 6.1에 따른 분석방법은 KS Q ISO IEC 17025 및 KS A ISO 5725-1~6 내에서 유효성이 확인된 시험방법이어야 한다.
- 6.3 제품의 석면 함유량을 시험하는 기관에서는 분석을 위한 운영절차 지침 및 시험방법에 대한 유효성 검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7. 검사 방법

- 7.1 석면종류의 구분 시험을 위한 구분은 4.5.1에 의한 종류별로 구분한다.
- 7.2 시료 채취 방법 필요할 경우 KS Q 1003에 따른다.
- 7.3 시료의 크기, 합부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 다음에 따른다. 다만, 합부 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검사구분	시료의 크기 (n)	합격판정 개수 (Ac)	불합격판정 개수 (Rc)
안전 확인	3	0	1

주)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또는 질량을 말하며, 특성상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시료에 한하여 n=1을 허용할 수 있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직무윤리 서약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성 명 :

(서명)

■ [별지 제5호서식]

Serial No :

CERTIFICATE OF CONFORMITY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 Certification Body

Official
Seal

■ [별지 제6호서식]

요건승인번호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증 겸용)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수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수입화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제품명	모델명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번호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품목분류번호(HS)	수량(단위)			
	선하증권번호(B/L N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동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의사항	본 확인증은 신청자가 기입한 확인 신청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의하여 본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신고를 한 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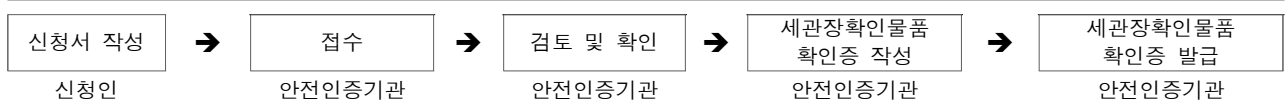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공장심사보고서

실시기관명 :

1. 일반 사항

1. 회 사 명 :

소 재 지 :

※ 1.1항의 변경(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등)이 있는 경우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1.2 입회인성명, 소속, 직책 :

1.3 심사구분 : 안전인증 시 공장심사 , 제조자 정기검사, 수입업자 정기검사

1.4 공장심사개요

안전인증 기 관	확인횟수	인증번호	제품분류	제품명

* 필요시 별지 사용

1.5 심사결과 : 적합, 부적합[()개선명령, ()인증취소]

1.6 심사원명 : _____ 심사일자: _____년 ____월 ____일

2. 원자재검사

- 2.1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재질 및 부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검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2.2 공급자의 검사성적서등으로 원자재검사를 대신하는 경우 검사성적서에는 제품명, 수량, 발행일이 기록되어 있고 공급자의 서명이 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 2.3 부적합품은 명확하게 관리되고 제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2.4 수입업자는 제조공장과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최신의 정보 (제품설명, 도면, 사진, 안전관리 부품목록 등)를 공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2.5 수입업자는 제조공장에 안전인증제도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표시사항, 시료채취, 공장심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2.6 수입업자는 수입한 인증제품의 내역을 관리하는가?
(기간별, 제품별, 모델별 등 수입수량, 재고수량, 판매수량 등 내역확인) (예) (아니오)
-

3. 공정검사

- 3.1 품질관리담당자 및 작업자는 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공정에 대한 작업지침서 또는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최신의 것이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3.2 시험기록표에 기록된 공정검사 내용은 운용요령 **별표 19** 제 1호 또는 **별표 28** 제2호의 공정검사기준을 만족하는가? (예) (아니오)
- 3.3 공정검사기준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3.4 부적합품은 명확하게 식별되며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3.5 공정검사 결과를 관리책임자가 확인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3.6 수리된 제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시험 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4. 제품검사

- 4.1 제품검사는 실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4.2 제조업자가 실시하는 제품검사 내용은 운용요령 **별표 19**의 2호 또는 **별표 28** 제3호의 기준을 만족하는가? (예) (아니오)
- 4.3 제품검사기준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4.4 제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품생산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5. 제조·검사설비 등

- 5.1 해당 안전인증제품을 적합하게 제조할 수 있는 제조설비(제조설비목록 및 설비관리, 설비별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기술능력, 외부설비에 대한 외주관리절차 및 상태 등)를 갖추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2 자체검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3 자체검사를 위한 검사설비는 운용요령 **별표 18** 또는 **별표 27**에서 규정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4 검사설비의 기능이 정상인가? (예) (아니오)
- 5.5 검사설비의 기능점검주기는 적합한가? (예) (아니오)
- 5.6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점검 절차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7 검사설비를 기능점검 하는 자는 기능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조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5.8 검사설비의 기능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취한 조치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예) (아니오)

6. 검사설비의 교정

- 6.1 검사설비는 교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 6.2 검사설비에는 라벨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차기교정일이 표시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 6.3 검사설비의 교정을 공인된 교정기관으로부터 받았는가? (예) (아니오)

7. 기록의 보존

7.1 자체검사 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7.2 원자재 · 공정 · 제품검사기록은 적합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7.3 검사설비의 기능점검 및 교정기록은 적합하게 보존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심사원은 기록에 서명하였는가? (예) (아니오)

“예” 인 경우 어떤 것인지 기입할 것.

8. 표시사항

8.1 공장방문 시 안전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예” 인 경우, 제품명, 모델명, 인증번호 등을 기재할 것

8.2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등 표시하여 할 사항이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 “아니오” 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쇄되어 있는 표시 라벨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8.3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표시등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기록이 있는가? (예) (아니오)

9. 인증제품의 변경

- 9.1 제조업체의 규정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승인 없이 인증제품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9.2 제조업자는 인증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변경을 하였는가? (예) (아니오)
- 9.3 인증제품에는 인증서에 기재된 안전관련부품이 사용되
는가? (예) (아니오)
- 9.4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기관의 승인 없이 인증제품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문서화 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9.5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부품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기록이 있는가? (예) (아니오)

10. 부적합품의 관리

- 10.1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의 절차서가 있는가? (예) (아니오)
※ “예” 인 경우 문서번호를 기입할 것.
※ “아니오” 인 경우 절차를 보조페이지에 기록할 것
- 10.2 부적합품 처리절차 및 방법은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가? (예) (아니오)

11. 보관 및 관리

- 11.1 원자재 및 완제품은 적합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가? (예) (아니오)

12. 고객 불만의 처리 및 안전교육

- 12.1 제조업자는 고객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12.2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경우, 제조업자는 고객 불만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12.3 제조업자는 고객 불만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12.4 고객 불만 해소 및 안전 교육을 관련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최근 1년 이내 최소한 2일 이상 또는 현장교육 1일 이상 받은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 동 항은 정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개선명령 및 표시사용금지처분 받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정한다.
- 12.5 수입업자는 A/S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12.6 수입업자는 제품 관련된 고객 불만사항을 관리하는가? (예) (아니오)

13. 생산공정의 내부감사

- 13.1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13.2 감사내용 : 감사일자 감사자

14. 개선조치의 확인

- 14.1 제조업자는 전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였는가? (예) (아니오)
※ 개선조치의 실시내용을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15. 시료채취

※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시료의 세부사항을 “시료채취확인표”에 기록할 것.

15.1 직접 시료를 채취했는가? (예) (아니오)

※ “아니오” 인 경우, 그 이유와 채취자를 기록할 것.

15.2 채취된 시료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아니오” 인 경우 그 이유를 “시료채취확인표”에 기입할 것.

16. 공장심사 결과

16.1 본 보고서의 “보조페이지”에 공장심사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사항, 취소사항, 제조업자의 건의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제조업자에게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16.2 심사원은 공장심사 결과를 아래의 해당되는 란에 √ 로 표시할 것.

- 1. 적 합
- 2. 부적합
- 가. 개선명령
- 나. 취 소

16.3 첨부

- 보조페이지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페이지에 번호를 기재할 것
- 동 보고서에 따른 첨부자료

17. 안전인증현황 확인(붙임 안전인증현황) (예) (아니오)

※ 심사원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에게 사본 1부를 전달하여야 한다.

※ 공장 또는 사무소 체제시간 : 시간

전기용품 시험기록표(공정검사)

제품품목: _____

절연종류 : _____

검사항목	검사율 (%)	검사조건	시간	기준치	불합격 표시방법	비고	W
							R
a. 스파크테스트 (전선류)							
b. 정전용량 (커패시터)							
c. 내전압	기초절연	V	s	mA 최대			
	부가절연	V	s	mA 최대			
	이중절연	V	s	mA 최대			
d. 기능(운전) 시험							
e. 외관검사							
f. 표시사항							
g. 압력조정장치시험 (전기압력솔에 한정함)							
h. 압력안전장치시험 (전기압력솔에 한정함)							

※ d : 모든 조정부위 및 부품들이 검사과정에서 점검되는지를 확인한다.

W = 심사원이 시험에 입회한 경우

R = 공정검사 기록으로 확인한 경우

시료채취확인표

안전인증기관	시료번호	수량	제품명 (모델명)	안전인증 번호	채취장소	생산시기 (년,월)
<p>- 회 사 명 :</p> <p>-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p> <p>- 시료채취자 : (서명 또는 인)</p>						

※ 발취장소에 기재하는 내용 : P : 생산중의 제품으로부터 채취한 시료
 S : 재고품
 F : 제조업자로부터 송달 받음
 T : 인증심사원에 의해 인증기관에 전달됨
 A : 대리인에 의해 전달됨

안전인증 보유 현황

○ 제조업체명(또는 수입업체명) : ○ ○ ○ (주)

일련번호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비고
1					
2					
3					
4					
5					
.					
.					
.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제조업체명(또는 수입업체명),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다 수 공 장	회사명	1)	대표자명	1)	
		2)		2)	
		3)		3)	
		4)		4)	
		5)		5)	
	주 소	1)			
		2)			
		3)			
		4)			
		5)			
담당자명			전화번호		
전자메일			팩스번호		
제 품 명 (정 격)			모 델 명		
파생모델명					
기타정보					
<p>확 인 사 항</p> <p style="color: red;">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위의 시험용 시료는 등재하고자 하는 위의 다수공장에서 동일하게 제조하는 시료임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업 체 명 :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